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 안전관리 경영

강사 : 김용길

▶ 강사 소개

- 세화종합사회복지관 관장(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 연수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전문위원회 위원장
- 인천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 부회장
-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위원회&자문위원
-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평가 위원
- 노인맞춤돌봄특화서비스 경기 지역실무위원단 활동
- 지속가능경영재단 복지ESG전문위원
- 前) 중앙사회서비스원 2027년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개발 자문위원
- 前)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책법제위원회 위원
- 前)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총무과장(태화복지재단)
- 前) 강남구청소년쉼터 관장(태화복지재단)
- 前)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관장(태화복지재단)
- 前)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前) 백석대학교 & 신구대학교 겸임교수

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
세화종합사회복지관



- 이메일 주소 : t9448@hanmail.net
- 전화번호 : 010-2800-9448
-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taiwhaman

- 관심 주제 : 기후위기, ESG 경영, 비영리마케팅, 커뮤니티 케어, 복지선교, 슈퍼비전, 사례 관리, 리더십, 글쓰기 등

강의PPT&영상 MORE >

지역사회통합돌봄시행과 지역사회복지관..	taiwha...	7	25.12.19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윤리와..	taiwha...	19	25.12.02
노인 우울증 당사자를 위한 상담 및 사..	taiwha...	33	25.09.16
집필중인 주제들입니다~	taiwha...	11	25.08.12
좋은 관계 맺기를 통한 행복한 나의 삶..	taiwha...	34	25.07.11
뉴노멀시대 사회복지관의 역할(인천대학..	taiwha...	19	25.05.02

사회복지현장일기 MORE >

7년간의 성과들~	taiwha...	17	25.12.30
사회복지관 인력배치 기준관련 발제에 ..	taiwha...	21	25.12.17
2025년 서울복지매거진 인터뷰 기사	taiwha...	6	25.12.17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을 응원..	taiwha...	37	25.12.03
AI와 사회복지실천에서 우선적으로 고..	taiwha...	67	25.10.20
인천에서 7년간의 루틴	taiwha...	33	25.10.15

한 줄 메모장 MORE >

등급변경 및 기타 질문 사항을 이곳에 하셔요^^등급이. .

등록

0 / 600자

연구 주제와 작성된 보고서(2019~현재까지)

① 성공하는 조직의 7가지 조건 이해와 적용(미간행)

② 코로나 대응 사회복지실천과 방향성 찾기(미간행)

③ 기후위기와 사회복지실천에 필요성(미간행)

④ ESG와 사회복지실천의 적용점 찾기(미간행)

⑤ 사회복지 트랜드에 대한 이해와 방향성 찾기(미간행)

⑥ 기후위기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⑦ 코로나시대의 온택트 서비스 사례연구(인천시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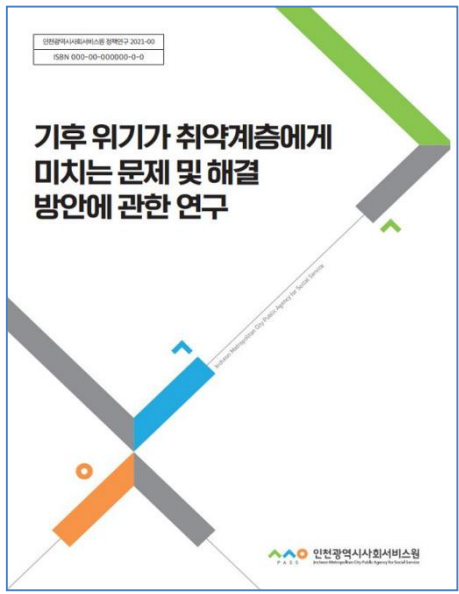
⑧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실천하기(미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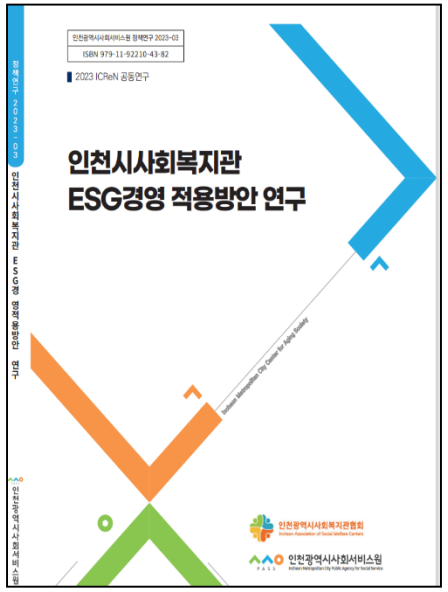
⑨ ESG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조직 운영에 관한 연구

⑩ 사회복지관 ESG 실천가이드

⑪ 인천시사회복지관 ESG경영 적용방안 연구









contents

1. 사회복지시설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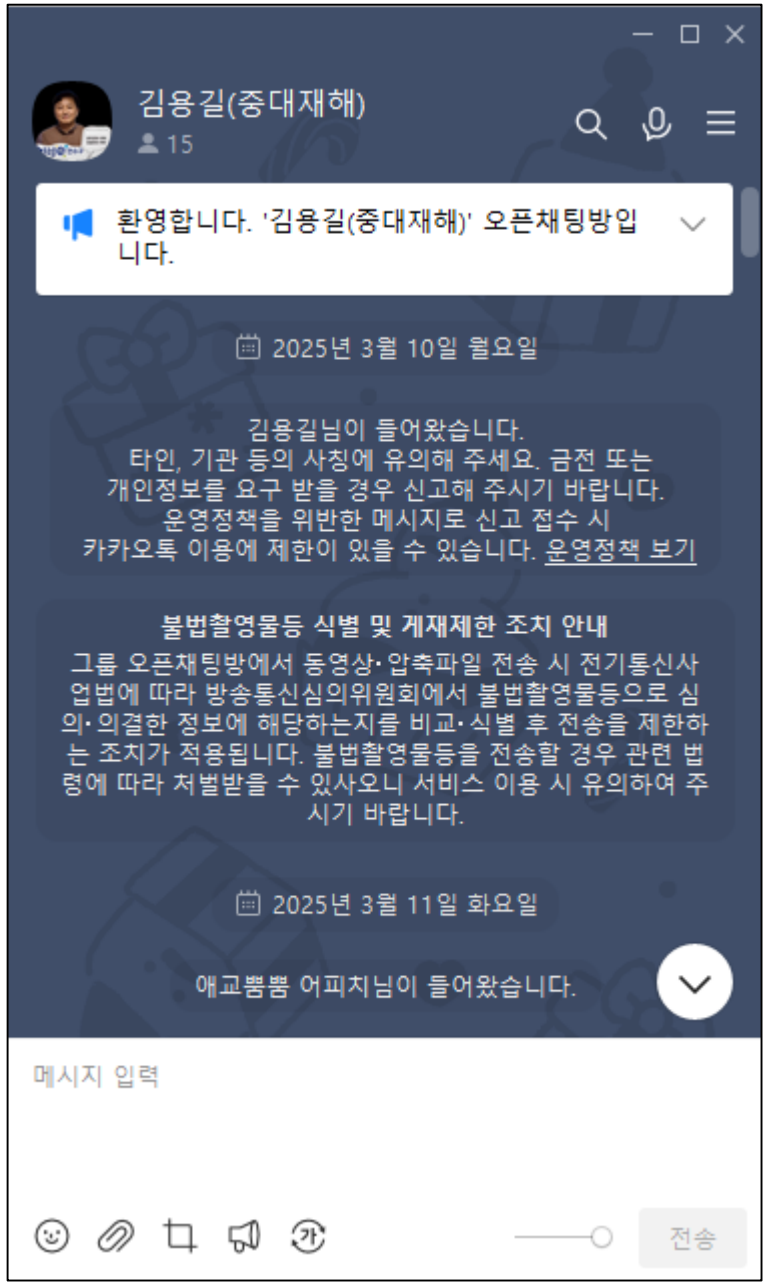
2.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및 매뉴얼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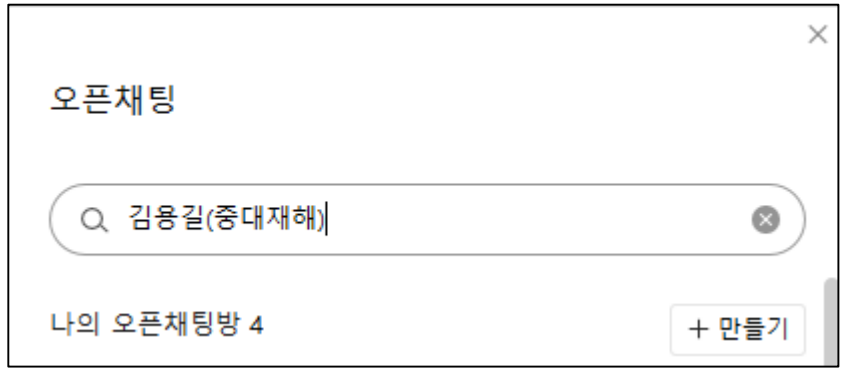
3. S사회복지관 시설안전관리 사례

4. 사회복지시설 평가지침에서 요구하는 시설안전관리 사항

5. 중대재해 및 시설안전관리 종합계획서 작성하기









https://open.kakao.com/o/gmr5oPkh

하이인리의 법칙
(Heinrich’s Law)



산업 안전 전문가인 허버트 윌리엄 하이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가 그의 저서**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에서 처음 소개한 법칙으로,** 1:29:300**의 비율로 요약됩니다. 즉,** 1**건의 중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약**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건의 잠재적 사고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사고 발생 5단계
1단계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소(선천적 결함)
2단계
개인적 결함
3단계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정한 상태
4단계
사고발생
5단계
재해

1 태안화력발전소 및 이천물류센터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언어 추가

문서 토론 읽기 편집 역사 보기 도구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는 한국발전기술 소속의 24세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1994년 12월 6일 ~ 2018년 12월 10일)이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018년 12월 10일 밤 늦은 시간 태안화력 9·10호기 트랜스퍼 타워 04C 구역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서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고이다.[1][2] 김용균은 11일 오전 3시20분 경 기계에 끼어 머리가 절단된 채로 숨진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김용균의 사망 소식은 12월 11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고 김용균씨의 생전 모습

12월 13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유가족과 함께 현장조사를 통해 김용균의 유품을 확보해 15일에 공개했다. 유품에는 면봉, 동전, 휴대전화 충전기, 지시사항을 적어둔 것으로 보이는 수첩, 물티슈, 우산, 샤워 도구, 속옷, 과자, 발포 비타민, 작업복과 슬리퍼 등이 있었다. 특히 여러 종류의 컵라면과 고장 난 손전등, 건전지들을 갖고 있어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했다는 사실을 짐작케 했다.[3]

12월 22일 청년전태일과 청년민중당 소속 회원들 약 50명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습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날 오후 12시 30분 청년단체 회원들은 발전소 앞에서 현수막을 펴고 기자회견을 하고, 회원 일부는 발전소 안으로 들어가 2시간동안 연좌농성을 벌였다.[4]

SPC삼립 시흥 제빵공장서 50대 근로자 사망…윤활 작업중 사고(종합)

강영훈 · 2025. 5. 19. 10:01

320

공장 가동 중단…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시흥=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잇단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또다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인 것으로 전해졌다.



1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발생 시기	1994년 ~ 2011년
발생 위치	대한민국 전역
사망 원인	폐섬유증, 천식, 폐암 등
사망자	1700명 이상[1]
부상자	5902명 이상
구제신청자	7862명
건강피해자	95만 명
노출자	894만 명
후속 조치	가습기 살균제 ? 제조업체의 배상
영향	일부 제조업체이

2.1. 가습기 살균제



안전과 건강을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

천안시, 정신보건시설 안전 점검실시… 안전관리

충청인 | 기사입력 2014/03/07 [11:38]



[천안=뉴스충청인] 충남 천안시는 사고 취약도가 높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사고를 예방하고, 보건시설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안전 지킴이 다.

뉴스 > 전국

옥천군보건소, 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 안전점검 나서

국제뉴스 | 2024.11.27 | 신고

주소복사 스크랩



(제공=옥천군청)

(옥천=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옥천군보건소(소장 김홍규)는 27일, 겨울철을맞아 관내 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한 민관합동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옥천성모병원, 참조은요양병원 2개 의료기관과 부활원, 영생원 2개 정신요양시설로 보건소 직원과 민간 전문가로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됐다.

홈 > 경제 > 경제일반 > 주요 기사

포스코이앤씨 CEO 또 교체...중대재해 잇따르자 7

김부삼 기자 | 승인 2025.08.06 09:00 | 수정 2025-08-06 10:43 | 댓글 0

정희민 대표, 사과 6일 만에 사퇴..."무거운 책임 통감"
올해만 4명 사망...대통령 "미필적 고의" 강한 질타
그룹 차원 TF 가동..."사업장 안전관리 전면 쇄신"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대표이사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잇단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취임 7개월 만에 전격 사임했다. (포스코이앤씨 전경) / 사진 = 서울뉴스통신 DB

HOME > 산업 > 건설부동산

포스코이앤씨, 연이은 중대재해 사고로 '난색'

김동현 기자 cstimes@cstimes.com | 기사출고 2025년 04월 16일 10시 32분 | 댓글 0



컨슈머타임스=김동현 기자 | 포스코이앤씨가 연이은 중대재해급 사고로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최근 시공을 맡은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김해 사망 중대재해 올해 벌써 5명..."강력한 처벌 필요"

경남CBS 이형탁 기자 · 2025. 8. 18. 15:00

2

지난 1월 포스코이앤씨 포함



경남 김해에서 사망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벌써 올해에만 이 지역에서 5명이 일하다 숨졌는데 중대재해 사업장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단독] 내년부터 중대재해 기업 정보 공개... 재계 "과도한 기업 때리기"

유승혁 · 2025. 8. 19. 05:04

14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 전환 추진

의견서 5년간 3833건 작성됐지만
피의사실 공표 이유로 그간 비공개
산안법 개정해 사고 원인 등 공표
경찰도 산재 전담수사팀 신설 예정
범죄 확정 전 공개 땐 기밀유출 우려



공사장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이클릭아트

SPECIAL REPORT

MORE →

ESG 시대, 열린 기업과 위험관리 시스템

산업재해는 작업장에서의 기술적인 문제와 밀접히 결합되어 있지만, 그 발생 원인은 여러 층위에 걸쳐 있다.

아울러 작업장 수준의 안전이 급속한 기술변화 과정에서 재편되는 노동과정을 넘어 변화하는 세대와 교육수준에 따른 조직 구성원간에 작용하는 안전문화, 변화하는 시장조건과 재정적 압력에 반응하는 경영진의 경영전략, 변화하는 정치환경과 대중의 인식에 따라 반응하는 규제기관과 입법과정에까지 연결된 수직적 연결고리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종합사회과학적인 접근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안전문화/경영전략/사회과학적인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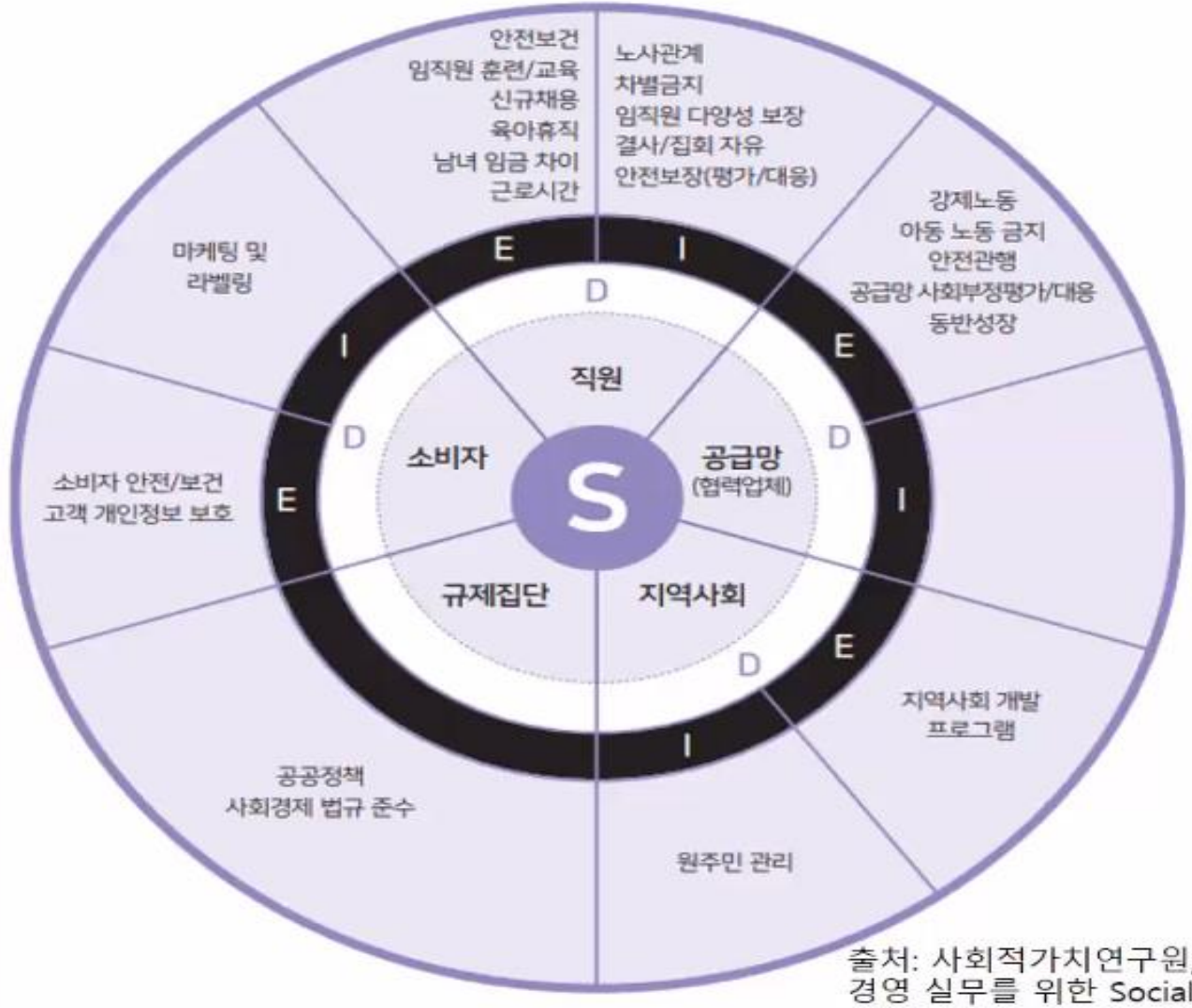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ESG경영은 경쟁력과 신뢰성을 확보 해 준다"

ESG 경영이란

사회와 리스크관리



출처: 사회적가치연구원, 임팩트온, (2022), S in ESG: ESG 경영 실무를 위한 Social, 파라프로젝트

사회적 가치의 흐름


CSR, CSV와 비슷한 개념일까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이해 당사자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회적 의무를 충족하고자 수행하는 활동
CSV
CREATING SHARED VALUE
기업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앞글자를 딴 약자로, 기업의 비(非)재무적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
KTEG 상상플래닛

ESG란?

ESG란 무엇인가?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말

매일경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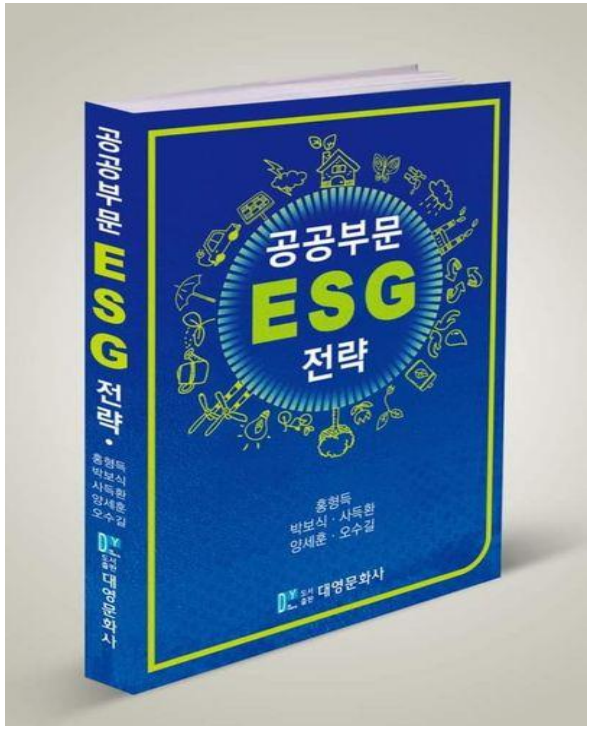




최근에는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 개선이나 브랜드 가치 향상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으로 기업의 경영전략과 시스템에 의한 활동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주자본주의**를 넘어 근로자,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으로 구성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확대되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에 기인하고 있는 개념이다"

사회적 책임은 **광의적 의미**로 '경제성장, 사회복지 및 환경이 상호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협의적 의미**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을 말하며 여기에는 **인권, 노동문제, 작업장 보건 및 안전, 제품질 및 품질 등**을 포함한다.



왜 ESG와 사회복지실천인가?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최소한의 노력을 통해 위험의 결과로 발생하는 결과(손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 기법

조직의 리스크 관리





@사회복지노조

조직의 내적 리스크 (risk)

- 당사자로부터 겪는 종사자 인권문제
- 갑질문제
- 다양한 차별
- 다양한 폭력
- 불투명한 채용절차
- 계약직 직원(관장)들의 고용 불안문제
- 종사자간 세대차이에서 오는 소통문제
- 조직의 공식적 의사소통 문제(일방적)
- 기관장의 소통문제
- 잦은 이직에 따른 업무과중
- 종사자 소진
- 인사적체와 보상체계 미흡
- 종교활동 강요
- 낮은 근속률과 숙련성 부족
- 리더의 역량 부족
- 형평성 없는 업무 분장
- 시설등의 노후화
- 법인과 구청이라는 두개의 지배구조
- 사회복지전문가로서의 내재된 가치 및 전문성부족
- 법인의 역할 부재 (무능력 등)

<표 2-5> 조직의 내적 위기 (Risk) 요소

영역	빈도(%)	내용
의사소통	16 (31.4)	- 조직의 공식적 의사소통 문제(일방적 업무지시) (9) - 종사자 간 세대차이에서 오는 소통문제(6) - 기관장의 소통문제(1)
업무환경	16 (31.4)	- 종사자 소진(6) - 잦은 이직에 따른 업무 과중(2) - 종교활동 강요(2) - 직급별 업무량 배분의 비형평성(1) - 인사 적체와 보상체계 미흡(1) - 낮은 근속률과 숙련성 부족(1) - 리더의 역량부족(1) - 형평성 없는 업무분장(1) - 시설/장비들의 노후화(1)
인권	8 (15.7)	- 당사자로부터 겪는 종사자 인권문제(2) - 갑질(1) - 다양한 차별(1) - 다양한 폭력(1)
인사 및 채용	3 (5.8)	- 불투명한 채용절차(2) - 계약직 직원(관장) 들의 고용불안(1)
기타	8 (15.7)	-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내재화 된 가치 및 전문성 부족(2) - 조직원칙이 제대로 작동 되지 않음(2) - 법인과 구청이란느 두개의 지배구조(1) - 법인 역할 부재(무능력) (1) - 조직의 미션과 비전의 합의와 공유 부재(1)

조직의 외적 리스크 (risk)

- 지리적 접근성 문제
- 인구의 변화
- 감염병 문제
- 기후위기 문제
- 양극화 심화
- 지침에 따른 종사자 처우의 열악함
- 당사자 중복수혜문제(?)
- 현실적이지 못한 미흡한 보조금(예산) 지원
- 보조금에 의존해야하는 시설 운영 구조
- 정치적 상황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
- 시설 위탁문제
- 공문원의 갑질문제
- 기관의 책임은 증가, 권한은 축소(책임>권한) 문제
- 지역주민 욕구 수렴한계(?)
- 다양한 지역주민 욕구변화
- 지역주민들의 역량 부족
- 공공에서 민간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운영
- 정보격차 심화
- 정치적 개입
- 열악한 지역사회 환경

<표 2-5> 조직의 외적 위기 (Risk) 요소

영역	빈도(%)	내용
사회문제	25 (41.7)	- 감염병 문제(9) - 다양한 변화, 사회문제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복지관의 준비 부족(7) - 인구의 변화(1인가구의 증가) (4) - 기후 위기 문제 (4) - 양극화 심화 (1)
사회복지운영	19 (31.7)	- 정치적 상황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 (12) - 미흡한 정부 지침과 종사자 처우의 열악 (4) - 현실적이지 못한 미흡한 보조금 (예산) 지원 (2) - 보조금에 의존해야하는 시설 운영구조(1)
지역주민 (당사자)	7 (11.7)	- 지역주민 욕구 수렴 한계 (3) - 당사자 욕구 변화 (1) - 이용자의 중복 수혜 (1) - 사회복지 인식 부족 (1) - 지역주민들의 역량부족(1)
거버넌스	4 (6.7)	- 기관책임은 증가, 권한은 축소(책임>권한) 문제 (2) - 시설 위탁문제 (1) - 공무원 감질 문제 (1)
지리적 여건	1 (11.7)	- 지리적 접근성 (1)
기타	4 (6.7)	- 공공에서 민간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운영 (2) - 정보격차 심화 (1) - 열악한 지역사회 환경 (1)
합계	-	-

Q&A로 알아보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본이해



중대재해 사이렌이란?

'**중대재해 사이렌**'은 고용노동부가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중대재해 정보 공유 플랫폼**입니다. 오픈 채팅방 형태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실제 중대재해 사례와 함께 계절별·시기별 위험요소, 예방 대책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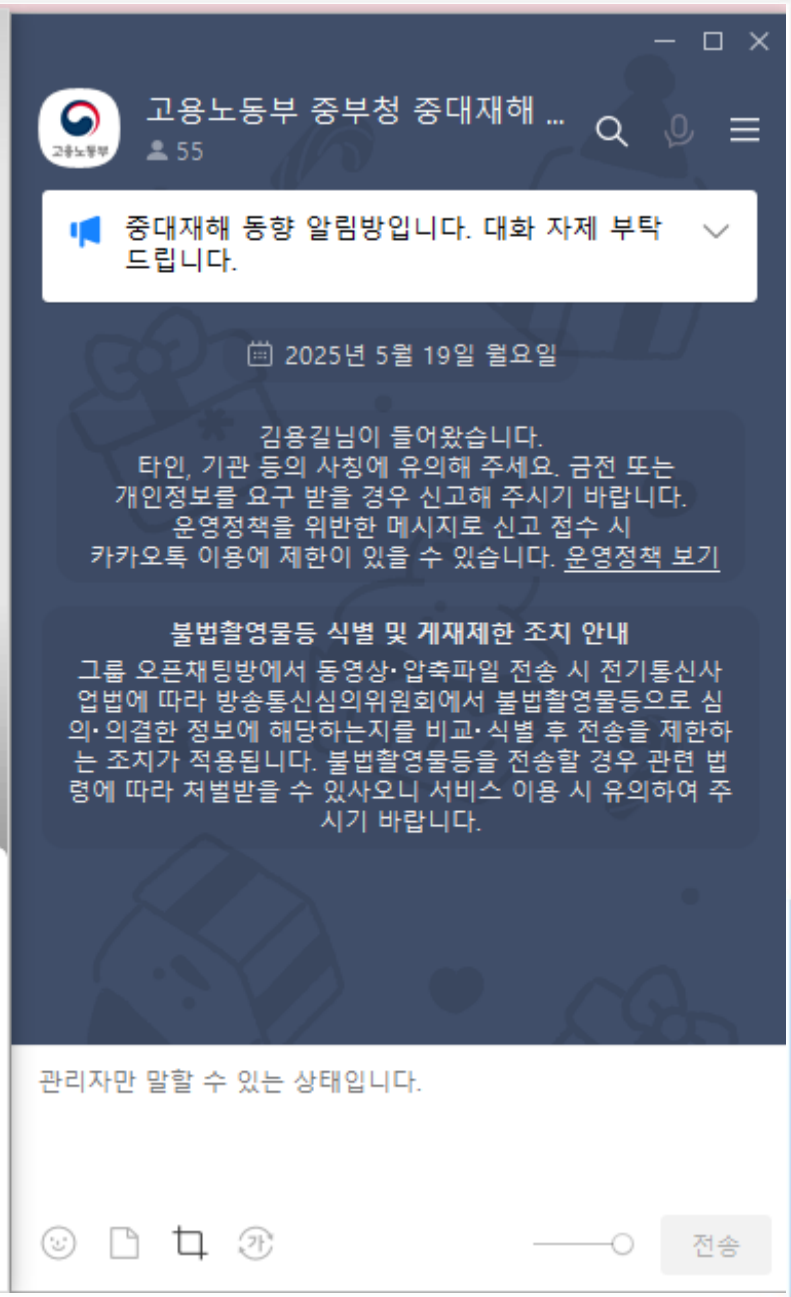
📚 주요 수록 내용

- 건설업, 제조업 등 **업종별·공정별 사고사례**
- 여름철 폭염, 겨울철 한파 등 **계절별 위험요소와 대응법**
- **안전관리자 교육 사례**, 현장 **Tool Box Meeting 활용법** 등

특히 건설·제조·기타 업종별로 분류된 데이터 덕분에, 각 사업장에서 자신들의 업종에 맞는 유사 사고 사례를 빠르게 찾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실용성이 뛰어납니다.


고용노동부
직접운영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중대재해 정보 오픈채팅방
전국 중대재해
발생 속보
지역 맞춤형
안전보건 정보
중대재해
사이렌
TALK
계절별·시기별
위험요인·예방자료
사업주, 공장장(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자 등 직접 참여 가능
사업장 소재지별 오픈채팅방 참여방법
뒷면에서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별 관할관서 확인
QR코드 스캔
오픈채팅방 입장
카카오톡에서 소재지 오픈채팅방 찾기
Step 1
카카오톡
오픈채팅 접속
Step 2
오픈채팅방
검색 클릭
Step 3
"#중대재해동향"
또는
"#중대재해사이렌"
으로 검색
Step 4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 하는
오픈채팅방 입장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중부청 중대재해 동향 알림방 2
그룹채팅 · 참여자 55/1500
개설일 2024.03.07
중부청산재과 근로감독관 구하라
#중대재해사이렌 #중대재해동향 #중부청
참여 중인 오픈채팅방


고용노동부 중부청 중대재해 ...
55
중대재해 동향 알림방입니다. 대화 자제 부탁드립니다.
2025년 5월 19일 월요일
김용길님이 들어왔습니다.
타인, 기관 등의 사칭에 유의해 주세요. 금전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 받을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정책을 위반한 메시지로 신고 접수 시 카카오톡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영정책 보기
불법촬영물등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안내
그룹 오픈채팅방에서 동영상·압축파일 전송 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전송을 제한하는 조치가 적용됩니다. 불법촬영물등을 전송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사오니 서비스 이용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만 말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전송



출처 : https://youtu.be/r6XVdCwJ8sI?si=OXfavnNS8GhI23v3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598-1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보건복지부

Ⅳ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107

1. 보험가입여부 확인 109
2. 시설안전점검 실시 111
3. 안전관리 인력 확보 115
4. 안전관리 교육·훈련 116
5. 건축물 및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 확인 117
6. 재난·안전 관련 주체별 주요 임무 118

1 보험가입여부 확인

* **책임보험**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배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의미함

** **책임공제**라 함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설립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를 의미함

-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 시·군·구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생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법 제58조제2항 및 시행령 제26조 [별표 5]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것
 - 따라서 지자체는 시설 정기안전점검 시 각 시설의 대인·대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이 담보될 수 있도록 1인당 배상책임보험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참조하되, 사회복지공제회 무료상담 등을 통해 시설 규모 및 생활자·이용자 수 등 시설 현황을 고려한 적절한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

보험가입 의무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안내

* **'14.6.5부터**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아래와 같이 기존의 화재대비 손해배상책임보험 외에도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바, 각 지자체는 이에 대한 안내와 그 지도감독 등에 힘쓸 것(법규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통합상품도 존재하므로, 반드시 보험이 2건 이상일 필요는 없음

 - 화재보험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제1호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해당하지 않음(*통칭 '영업배상책임보험(공제)'이 화재사고를 포함하여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공제)에 해당함)

 -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므로, 보험가입 시 관련 규정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유의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4, 시행 2014.6.5〉
>
>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Your Best Risk Solution Partner 삼성화재

보험가입확인서

INSURANCE CERTIFICATE

증권번호	8211088702000(재산종합)		
피보험자	인천인수1_사회복지과	보험기간	2021.01.01(00:01) ~ 2022.01.01(00:01)
주 소	인천광역시인수구원인제로315		
사업자번호	131-82-13727		
기업규모/업태	1,493,726,432원 / 1,427.60㎡		
담보대상	건물 및 부속시설, 가재도구(재물일괄주택용)		
보험조건	-계산공법보험담보 : 특종 · 특약사항 : 이래표 상기 및 건물에 설치는 입체의 부속시설 등 기타시설 포함 · 보상한도액 : 각 아파트별 가입금액한도(세조방가 상한보상) · 임차자에 대한 대위권 포기조항(단, 임차자의 고의 및 중과실은 제외) · 잔존물제거비용 : 손해액의 10%한도 · 소규모공사 : 1억 계약당 10억한도 (계약당 세조일자에 기준 상기 금액 초과시 부담보) · 손방비용 : 10억한도 ·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담보조항 : 10층 이상 or 3만 제외 · 이동일반 가재도구 한계 특약 : 1회사고 한도로 보상 (이동일내주택 제) ※ 상세 보상은 위 내용을 포함한 내용설명서 및 약관참조		

상기와 같이 Package Insurance에 가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1.01.01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Co., Ltd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보상한도 및 압류 금지 규정 참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4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 등)

① 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보상 한도"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의 보상 한도를 말한다.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2. 부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적 장해가 생긴 경우: 1억 5천만원 이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

⑦ 재난취약시설보험등의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책임보험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배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의미함

** 책임공제라 함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설립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를 의미함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설립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
- 설립목적 :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 주요사업
 - 회원에 대한 장기저축급여
 -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화재·배상 및 상해보험 등 보험상품** (※ 공제회 책임공제보험 미가입시설도 적정 보험가입에 대한 무료상담 이용 가능)
 - 생활안정자금 대출 서비스
- 문의처 : ☎ 02-3775-8899



- 시설의 지도·감독청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소멸식 상품을 가입토록 관리해 나가되

 - 불가피하게 해당 시설이 적립식 상품을 가입한 경우라면 시설이 그 만기 환급금 수령 후 시설운영비로 세입처리를 반드시 하도록 관리감독 강화 요망

 * 지자체 감사 시, '적립식' 책임보험 상품 가입하여 만기 환급금 수령 후 부적절한 세입처리로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된 건이 있었음(2013년 ○○도 특정감사 결과)

2 시설안전점검 실시

1) 사회복지시설 자체 안전점검(법 제34조의4)

- 정기안전점검
 - 시설장
 - 매반기

→

- 수시안전점검
 - 시설장 (점검자 : 안전진단전문기관, 전문건설업자)
 - 위해발생 우려 시

→

- 결과보고 (정기·수시)
 - 시설장 → 지자체 → 복지부
 - 매반기

→

- 개·보수요구
 - 시장·군수·구청장
 - 필요 시

- (정기안전점검) 시설장은 매 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시안전점검) 시설장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점검기관에 수시안전점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함
 - 안전점검기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법 제58조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요구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 지자체에서는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대상 선정 시 시설 안전점검 결과 개보수 필요 시설, 노후시설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검토할 것

시설물 안전관리 일일 점검표

결재	담당	과장	부장	관장

■ 점검일자 : 2022 년 월 일 (요일)
■ 오전점검 : 시 분 점검자 (인)
■ 오후점검 : 시 분 점검자 (인)

구분	관리내용	이상유무	조치사항 및 업무내용
건축물설비	○건물 균열이상여부 ○건물주변의 배수상태 이상여부 ○담장,축대, 옥상 및 계단난간 등의 상태 ○옥상 및 각 실 배수시설 및 우천시 누수여부 ○급식소 하수처리 시설 이상여부		
전기 설비	○전선, 배선기구, 변전설비 이상여부 ○전등설비 이상여부 ○전열설비 이상여부 ○심야전기설비 이상여부(난방,급탕시설)		
상수도설비	○상수도 급수설비 이상여부 ○지하수 급수설비 이상여부 ○오폐수 처리시설(정화조)이상여부 ○급수 및 배수모터 이상여부		
소방설비	○소화설비 이상여부(소화기,소화전,스프링클러) ○경보설비 이상여부 (화재탐지,누전경보, 청각 · 시각 경보설비) ○소화활동 설비이상여부 (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 연소방지설비) ○방화셔터, 완강기 등		
가스설비	○가스경보 설비 이상여부 ○저장장소 환기통풍 설비 이상여부 ○가스설비 주변 위험물 제거 여부		
안전 및 보안	○1층 조리실, 주민사무실, 푸드뱅크 보안여부 ○2층 사무실, 강당, 프로그램실 보안여부 ○3층 방과후교실, 사례관리센터 보안여부 ○각 프로그램실 시건장치 이상유부		
위생 및 청결	○1층 조리실, 주민사무실, 푸드뱅크 위생청결 ○2층 사무실, 강당, 프로그램실 위생 및 청결 ○3층 방과후교실, 사례관리센터 위생 및 청결 ○화장실 및 복도 위생 및 청결, 쓰레기통비움		
기 타	○기관운영차량(경차, 승합차 등) 이상여부 ○실별 비품 및 기자재 관리 ○강당 방송통신 장비 이상여부 ○각 층 창고 정리 정돈 여부 ○3층 베란다 및 외부 베란다 관리상태		

결재	담당	과장	부장	관장

2025년 2월 시설 및 차량 점검내용 및 조치계획

□ 점검일시 : 2025. 2. 4(화) 08:45~
□ 점 검 자 : 김용길 관장, 김삼석 관리기사
□ 제출일자 : 2025. 2. 17(월)

구분	장소	지적사항	담당	조치 결과
3층	휴게실	시계 고장		새것으로 교체 완료
	바둑실	바둑실게시판 붙이기, 키보드, 기타 사용여부	전수민	키보드, 기타 개인물품-처리예정
	바둑실	시계 고장	전수민	새것으로 교체완료
	세미나실창고	자물쇠보강	김삼석	3층 2곳 아외창고 자물쇠설치완료
	세미나실	옥상출입문 자물쇠보강 논의 하기		
	실내창고	박스에 물품 제목 붙이기	김승한	담당자에게 전달 완료
2층	강당	악기-드럼 등 비닐로 보강-먼지유입방지	최사랑	완료
	강당	안쓰는 악기는 창고로 이동보관하기	최사랑	강당창고 보관
	강당	악기실 천정 보수	김삼석	보수 완료
	강당방송실	합창단복 사용여부확인	민태희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보관하기로함
	강당방송실	방송실 시스템 정돈 뒤쪽 개폐장치 확인	민태희	완료
	지혜샘터	꿈동산 게시판 정리	민태희	완료
	지혜샘터	정리도서 중앙교회 기증 방법 있음 정기간행물보강	민태희	논의 중
	자봉실창고	옛날 조끼 등 안입는거 정리 폐기	전수민	사용예정
	자봉실창고	포장선물 사용여부확인	김승한	2월말 김승한대리 사용예정
	교육실	소화기받침 교체 / 벽지	김삼석	완료,. 벽지보수-미완료
	교육실	빔 프로젝트 스크린(이동식)정돈	김삼석	3층창고로 이동 보관 완료
	다목적실	의자정리	김삼석	일부의자 방과후 보관 완료
	다목적실	화이트보드 고정	김삼석	완료
	회의실	소화기 받침대없음	김삼석	완료
	피아노실	선풍기 커버로 정리하기	최사랑	완료
	피아노실	로비 온풍기 리드선 정리	최사랑	완료
차량				

● 상기 지적 사항은 담당자와의 논의를 거쳐 조치 사항을 보고

2) 지자체 안전점검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하·동절기(5월 및 11월) 등 취약시기에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하는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및 안전점검표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 필요한 경우 시설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

 * 지자체 주관 집합교육(권장), 시설 자체교육, 모의훈련 등

- 건축·부대시설 안전성,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상태, 보험가입 여부, 시설거주자 건강관리 대책 등을 점검하며, 취약시기의 특성에 따라 감염병 관리 대책*, 급식시설 위생상태, 폭설·제설·동파·난방관리 대책 등 추가 점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인/시설/단체 메뉴) 참고하여 개별 시설 사정 및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 바람

- 시설안전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는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고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으로 지자체에 보고하며, 지자체는 행복이음 시스템 안전점검 메뉴를 통해 결과 보고 및 안전점검 이력관리 수행
 - 지자체는 점검 전 시스템 권한 요청 및 승계 처리를 완료하고, 소관 시설을 적극 독려하여 점검결과가 누락되지 않고 보고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 '18년부터 시설정보시스템 및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점검 결과입력 전면 시행, '22년 하반기부터 행정업무지원시스템 기능 행복이음으로 이관

3) 민관 합동점검

- 정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중점점검 대상시설에 대하여 안전 취약시기(하·동절기, 태풍발생 시 등)에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매뉴얼 준수여부, 안전의식, 교육·훈련 등 종합점검 실시

4) 국토안전관리원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무상으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시설장 및 시·군·구 담당자는 이를 적극 활용할 것

 * 주요 점검내용 : 시설물 기초지반 침하 및 벽면 균열 발생 여부, 시설물 주변 석축·옹벽, 비탈면의 결함 발생여부 등

-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 시설장이 요청(또는 지자체 직권)하여 지자체(시·군·구 → 시·도)가 보건복지부 주무부서에 신청(필요시 신청 전 지자체 현장 확인 실시)



- 시설장 및 지자체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조치실적이 있는 경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4항에 따라 그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군·구는 동법 제19조제6~8항, 같은법 시행규칙 16조의3에 따라 매년 소규모 취약시설(사회복지시설)의 현황 등이 포함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15일까지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그 내용을 확인 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함

 ※ 시·도 담당자는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작성 현황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시스템(www.sfms.or.kr)을 통해 제출

소규모취약시설 자율안전점검 앱 활용 안내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설물 관리자의 점검능력 배양 및 교육을 위한 자율안전점검 앱을 개발하여 배포 중이므로 자체안전점검 등 시설물 관리 시 이를 적극 활용할 것
 * Play 스토어에서 "소규모취약시설 자율안전점검" 검색 및 설치 후 사용 가능
 * 사용법 등 문의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055-771-4816, 4818)으로 문의



https://safe.sfms.or.kr/biz/intro.do

함께 만드는 안전, 함께 나누는 행복

www.kalis.or.kr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매뉴얼

Safety Inspection Manual for National Living Facilities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1 목적

본「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은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방법 및 요령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설물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사각지대 발굴 등 국민의 안전 확보와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1-1] 점검 및 진단의 종류

구분		실시주기		비고
법체계	종류	건축물	토목시설	
「사회복지 사업법」	정기안전점검	매반기 마다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수시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도가 취약한 경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안전법)	긴급안전점검	필요시	필요시	모든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반기에 1회 이상	반기에 1회 이상	「시설물안전법」 1,2,3종 시설물 안전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정밀안전점검	2~4년	1~3년	
	정밀안전진단	4~6년	4~6년	「시설물안전법」 1종 시설물 안전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위와 같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으로 구분되어 있다.

2 자율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자율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수산정 표

양호			주의				불량			해당없음
10	9	8	7	6	5	4	3	2	1	

자율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건축물】

분야		점 검 항 목 (노란색 항목은 필수 점검항목)
(1) 책임보험 가입여부	시설관리	(1)「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였는가?
(2) 소방안전 관리		(2) 복도나 각 실마다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3) 소화기의 압력계 지침 위치가 녹색이며 내부 분말은 굳어있지 않은가?
(3) 전기안전 관리		(4) 손상된 코드선이나 피복이 벗겨진 전선을 사용하고 있는가?
		(5) 분전반 앞에 적재물 및 내부에 이물질, 부식, 누수, 분진이 있는가?
(4) 가스안전 관리		(6) 가스배관에 손상이 없으며, 비눗물 등을 활용하여 가스누출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7) LPG 저장용기 주변에 가연물이나 화기가 없으며, 보관상태가 적절한가?
(5) 시설물 안전관리	지반 주요 시설	(1) 시설물 주변의 지반 침하 또는 지반 침하에 따른 기울, 균열이 있는가?
		(2) 주요구조부재(보, 기둥, 슬래브, 내력벽)에 균열, 누수가 발생되었는가?
		(3) 구조부재의 처짐, 기울 또는 단면 손실 등의 변형이 있는가?
		(4) 철근 부식, 노출 또는 콘크리트의 박리 · 박락이 있는가?
		(5) 철골부재의 접합부 볼트 풀림, 누락, 탈락, 용접불량이 있는가?
		(6) 철골부재의 기울, 좌굴 등의 변형 손상이 있는가?
		(7) 철골부재에 부식에 의한 단면 결손 등의 손상이 있는가?
	일반 시설	(8) 옥상, 지붕 방수층의 상태는 양호한가?
		(9) 외부 마감재(드라이비트, 치장벽돌 등) 및 처마의 오염, 탈락, 균열이 발생하였는가?
		(10) 내부 천장, 벽체, 바닥 마감재에 파손, 오염, 누수 및 누수흔적이 발생하였는가?
		(11) 내부 칸막이벽(벽돌, 블록 등)에 균열 및 변형(기울음)이 발생되었는가?
		(12) 용도변경 또는 물품 적치(물탱크, 공조설비)로 과도한 적재하중이 작용되는가?

	부대시설	(13) 옹벽, 석축, 담장의 배수 및 손상 상태는 양호한가?
		(14) 비탈면(사면, 절개지)의 배수 및 손상 상태는 양호한가?
		(15) 외부 난간 및 파라펫 설치 및 손상 상태는 양호한가?
		(16) 내부 난간 설치 및 손상 상태는 양호한가?
		(17) 환기구의 손상 상태(덮개 설치 유무 포함)는 양호한가?
		(18) 점검로 등 손상 상태는 양호한가?
(6) 종합의견 및 건의사항		

상기와 같이 대상 시설을 조사함. 202 . . .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건축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시설명 : 동명 : 점검일자 :

구분	번호	점검내용	점검결과			
			양호	주의	불량	해당 없음
주요시설 (60%)	1	시설물 주변의 지반 침하 또는 이로 인한 건물의 기울음, 균열이 있는가?				
	2	구조부재(보, 기둥, 슬래브, 내력벽)에 균열, 누수 및 누수흔적이 발생되었는가?				
	3	구조부재의 처짐, 기울음 또는 단면 손실 등의 변형이 있는가?				
	4	구조부재의 철근 부식, 노출 또는 콘크리트 박리·박락이 있는가?				
	5	철골부재의 접합부 볼트 풀림, 누락, 탈락, 용접불량이 있는가?				
	6	철골부재의 기울음, 좌굴 등의 변형 손상이 있는가?				
	7	철골부재에 부식 또는 부재 미시공, 단면손실 등의 손상이 있는가?				
일반시설 (20%)	8	옥상, 지붕 방수층의 상태는 양호한가?				
	9	외부 마감재(드라이비트, 치장벽돌 등) 및 창호의 오염, 탈락, 균열이 발생되었는가?				
	10	내부 천장, 벽체, 바닥 마감재에 파손, 오염, 누수 및 누수흔적이 발생하였는가?				
	11	내부 칸막이벽(벽돌, 블록 등)에 균열 및 변형(기울음)이 발생되었는가?				
	12	용도변경 또는 물품 적치(물탱크, 공조설비)로 과도한 적재하중이 작용되는가?				
부대시설 (20%)	13	옹벽, 석축, 담장의 배수 및 손상 상태는 양호한가?				
	14	비탈면(사면, 절개지)의 배수 및 손상 상태는 양호한가?				
	15	외부 난간 및 파라펫 설치 및 손상 상태는 양호한가?				
	16	내부 난간 설치 및 손상 상태 상태는 양호한가?				
	17	환기구의 손상 상태(덮개 설치 유무 포함)는 양호한가?				
	18	점검로 등 손상 상태는 양호한가?				
	19	재해(화재, 붕괴, 태풍 등) 발생 시 피난 통로 시설의 상태는 어떠한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 및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안전관리 인력 확보

- 안전관리책임관 지정

3. 시설관리 및 방화관리 책임자 지정

- 안전관리 책임관 : 시설장 김용길
- 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 정 → 김용길, 부 → 윤상록
- 방화관리 책임자 : 정 → 주택관리공사 주공1단지 방화관리자 위임, 부 → 윤상록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대상시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함

 - (소방안전관리자의 임무) 「화재예방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는 피난계획 및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과 운영 및 교육,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의 임무를 수행

4 안전관리 교육·훈련

-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온라인 교육 안내

- 교육명 : 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온라인 교육
- 교육내용 : 사회복지시설 보험제도, 전기가스안전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등
 -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sfms.or.kr)에서 수강 가능(매년 8월경*)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일정 확인 가능
- 문의처 : ☎ 055-771-4920

5 건축물 및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 확인

- 시설 설치 신고 시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 확인 의무(지자체)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개정('15.6.26)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소방관계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당 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

- 사회복지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

- 화재안전 성능보강

 – 「건축물관리법」 제27조 및 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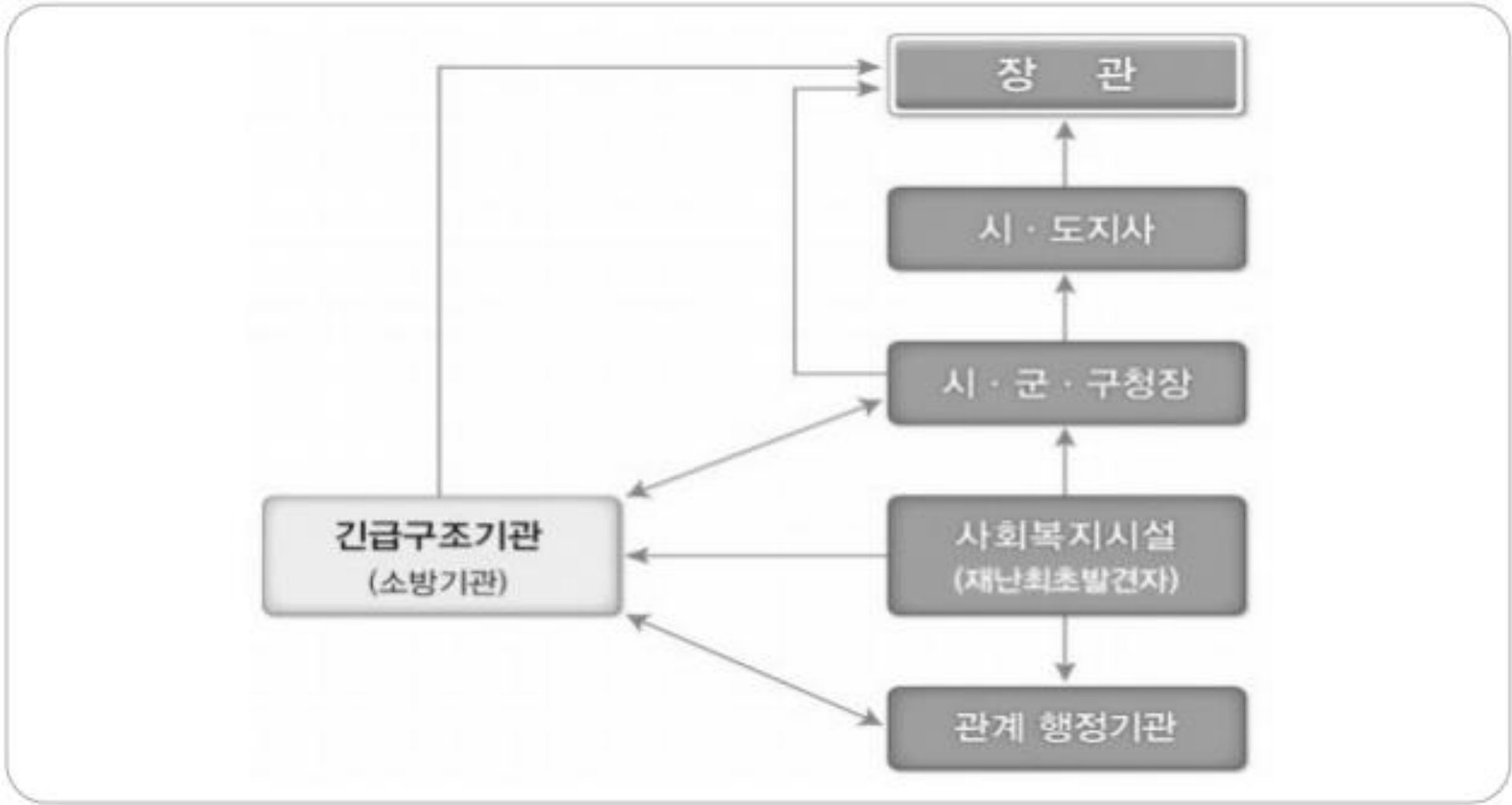
 – 지자체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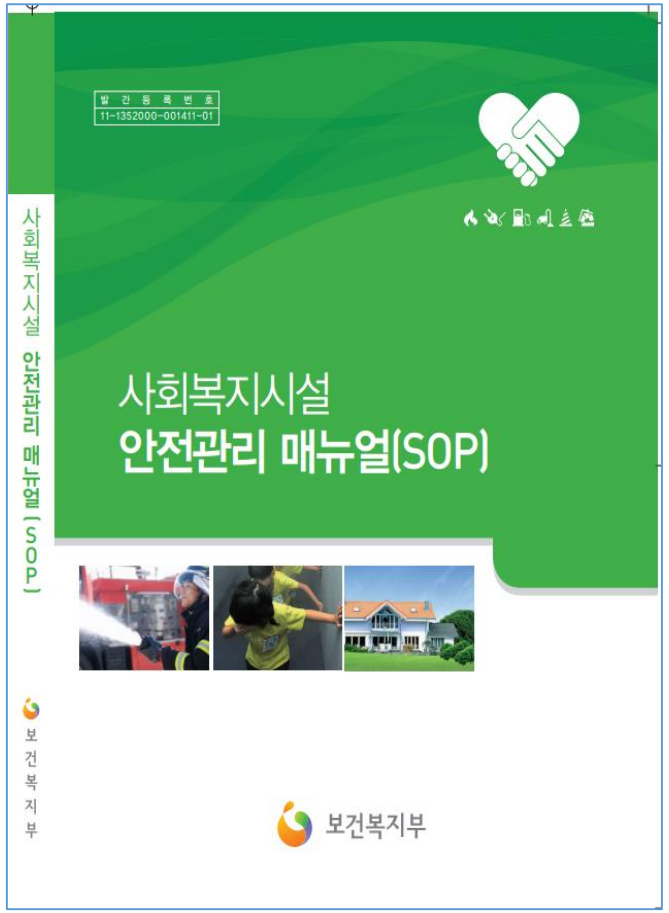
 ※ 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

6 재난·안전 관련 주체별 주요 임무

보건복지부	● 전국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 시설안전사고 지도·점검 등 예방조치 ● 시설안전사고 발생 시 조사반 파견 및 지원대책반 구성운영 ●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필요시)
시·도 및 시·군·구	● 관내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지도감독 ● 관내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점검, 문제시설 조치 ● 안전사고 관련 예산확보 등 재정적 지원 ● 시설안전관리 교육 실시 및 비상연락망 구축 ● 사고 발생시 시·도, 시·군·구 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필요시) ● 사고수습 후 사고발생요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시·군·구는 담당공무원을 관내 시설의 시설안전담당자로 지정 운영
사회복지시설	● 시설자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 ● 시설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실시결과 보고 ● 비상대비 모의훈련 실시, 비상연락망 구축 ● 시설자체 응급조치 및 사후복구체계 구축

재난발생 시 연락체계





본 SOP(재난관리절차, Standard Operating Procedure)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인적재난 · 자연재난 등의 재해발생으로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들이 위기상황에 있을 때 적절한 안전관리 및 대응절차를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 절차서로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행동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01 SOP 100 매뉴얼 기본사항

SOP 101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매뉴얼 개요
1. 매뉴얼 목적 22
2. 매뉴얼 적용범위 22
3. 매뉴얼 구성 23
4. 매뉴얼 활용 23

SOP 102 위험과 재난
1. 위험과 위험관리 24
2. 재난과 재해 24
3. 재난 종류 25
4. 재난 특성 26

SOP 103 재난안전관리 교육
1. 교육 필요성 27
2. 교육 내용 27

SOP 104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매뉴얼 적용
1. 장애인시설 안전관리 29
2. 노인시설 안전관리 29
3. 아동시설 안전관리 30
4. 영유아시설 안전관리 30
5. 정신보건시설 안전관리 30

SOP 105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유형별 행동특성
1. 장애인시설 이용자의 행동특성 31
2. 노인시설 이용자의 행동특성 34
3. 영유아 · 아동시설 이용자의 행동특성 35
4.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피난시 행동특성 36

SOP 106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1. 안전관리계획서 개요 37
2. 안전관리계획서 포함 항목 37

SOP 107 사회복지시설의 공통 피난관리
1. 피난계획과 준비 39
2. 피난도우미(유도자)의 임무 41
3. 시설 유형별 피난절차 및 유의사항 42
4. 안전피난을 위한 피난시설 관리 45

SOP 108 피난훈련 시나리오
1. 피난훈련 시나리오 만들기 51
2. 피난 훈련절차 56
3.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전 57

SOP 109 재난상황 전파 및 보고
1. 재난상황 전파 절차 58
2. 재난상황 보고체계 및 기관 59

SOP 110 사회복지시설의 관련법에 따른 안전관리
1. 시설의 안전관리관련 법 항목 64
2. 안전관련 점검 내용과 보고 67



재난영화로 알아보는 화재 시 행동요령 『소방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①	경영자 리더십	-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합니다. -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배정합니다. -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합니다.
②	근로자의 참여	-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③	위험요인 파악	-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합니다. -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파악합니다. - 유해인자를 파악합니다. -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④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합니다. -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⑤	비상조치계획 수립	-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합니다.
⑥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있도록 합니다.
⑦	평가 및 개선	-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합니다. -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합니다.

01 경영자 리더십

실행전략 _ 1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합니다

- ✦ 안전보건 목표와 개선의지를 담은 경영방침을 널리 알립니다.
- ✦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실행방법

- ○ 「안전보건 증진·유지」를 핵심적인 경영방침으로 하고,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인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경영방침을 담은 동영상·문서를 인트라넷·게시판 등에서 언제나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Suppliers and vendors) 및 고객에게도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알립니다.
 * 주요 업무 관계자에게 밝힘으로써 안전보건 경영방침 실천의지가 강화되는 효과
- ○ '재해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목표를 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자세한 내용은 110p 참고)
- ○ 사업장 내 공장 신축, 공정·설비·화학물질 변경 등 작업환경 변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안전보건 확보방안*도 마련합니다.
 * 해당 작업과 연관된 수급인 등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도 알리고 협의

실행전략 _ 2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배정합니다

- ✦ 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에 필요한 자원을 확인합니다.
- ✦ 기업의 재정적, 기술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을 배정합니다.

실행방법

- ○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조직(담당자)의 제안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구성·재편합니다.
 * 대기업은 가급적 안전보건 담당조직을 경영자 직속 기구로 배치
- ○ 중소기업은 정부의 기술지도사업,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등 외부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 ○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 안전보건 담당자 배치, 비상조치 계획 수립·훈련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합니다.

실행전략 _ 3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합니다

- ✦ 안전보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합니다.
- ✦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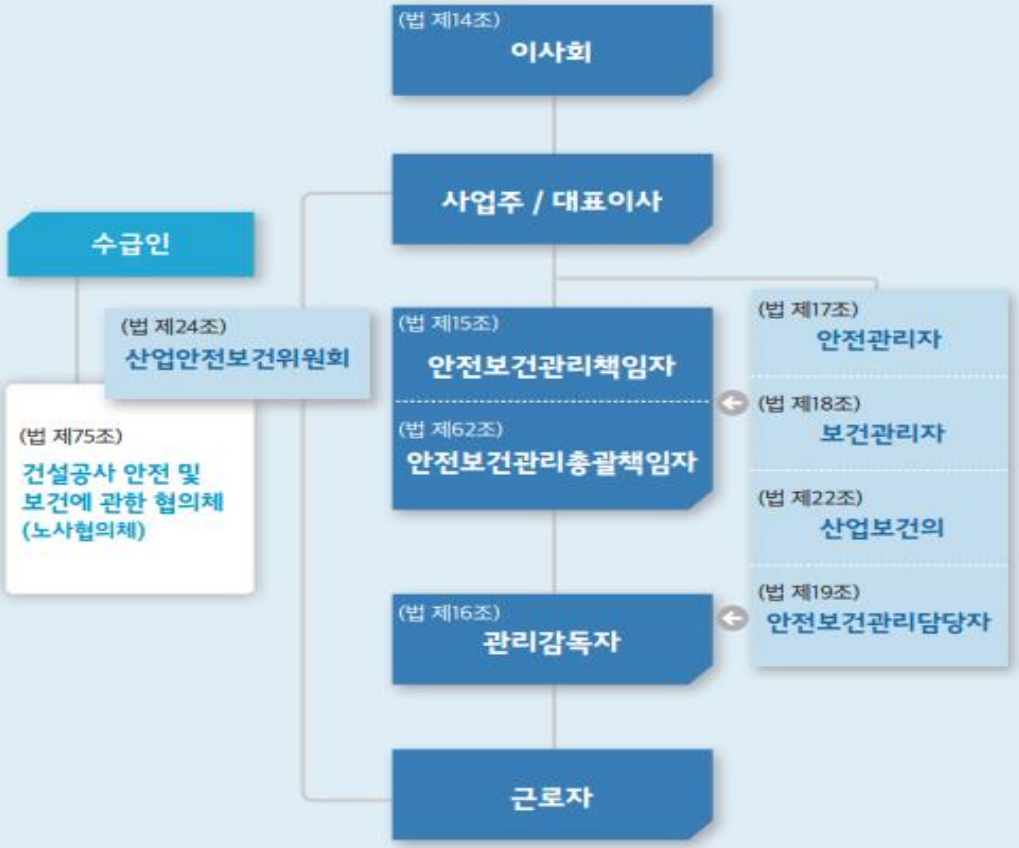
실행방법

-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인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확보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만의 업무가 아니며, 모든 경영자와 관리자의 기본적인 업무임을 명확히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사내 규정에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성원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합니다.
- 현장 작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합니다.
- 적극적인 참여자는 격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위험요인을 신고한 구성원에게 불이익·부담이 발생하면,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움

알아둡시다! 안전보건관리체제란?

산업안전보건법은 효과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위해 기본적인 **'구성원의 역할'과 '공식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02 근로자의 참여

실행전략 _ 1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안전보건 관련 참여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실행방법

-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 사업장 내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물질, 아차사고 발생 현황 등 그 밖에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합니다.
-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실행전략 _ 2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TBM, 안전제안 활동 등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합니다.
- 각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합니다.

실행방법

- 근로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 협의체(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 '건설공사 안전보건 협의체(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기업의 여건에 맞게 사업장, 부서, 현장, 공정 단위로 '작업 전 안전미팅(Tool Box Meeting: TBM)'을 도입합니다.

 * 사업장 내에서 수급인·공급업체 등의 직원이 작업을 하는 경우, 수급인 등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작업 전 안전미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142p 화재·폭발 사고사례 참고)

실행전략 _ 3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 ✦ 자유롭게 신고·제안할 수 있는 절차와 분위기를 만듭니다.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실행방법

-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위험요인 신고, 제도개선 제안 등을 독려하고 인센티브를 마련하며, 신고·제안자에게 징계·업무증가 등 불이익이나 부담이 없도록 합니다.
- 신고 및 제안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치결과를 공개합니다.
- 안전보건 활동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마련 시, 해당 작업과 연계된 작업자를 참여시킵니다.
-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Suppliers and vendors)와 '안전보건 문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눕니다.

근로자 참여 절차 관련

- **종사자 의견청취**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확보·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반기 1회 이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 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건설공사도급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등으로 갈음 가능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및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4조제6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산보위를 구성·운영 <산안법 제24조>

산보위 주요 심의·의결사항

- 사업장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산재통계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안전·보건 조치 및 그 밖에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건설공사 안전보건 노사협의체** 12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원·하도급 노사가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 <산안법 제75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는 사업주 의견을 들어 소속 근로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감독 참여, 법령위반사항 신고, 안전수칙 준수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 <산안법 제23조>

03 위험요인 파악

실행전략 _ 1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 위험요인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 파악된 위험요인은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리합니다.

실행방법

- 경영자·관리자는 현장 작업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합니다.
- 누구나 자유롭게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합니다.
-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Suppliers and vendors) 및 고객도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험요인 파악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

- 사고조사보고서 등 과거의 재해 보고서
- 기계, 장비 등 보유 현황 및 설명서
- 공정별 작업절차도
-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MSDS
- 안전모, 마스크 등 안전장비 보유 현황
- 외부 전문기관의 지도·점검 결과
- 작업환경측정 결과
- 근로자 교육자료

실행전략 _ 2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합니다

✦ 과거의 산업재해는 물론 아차사고까지 조사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실행방법

-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산업재해'와 '아차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 아차사고 공유 채팅방 개설, 우수발굴자 포상제 도입 등 활용
- 사고 조사 시에는 안전보건 담당자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되, 해당 작업자 또는 동종·유사 작업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아차사고 발굴 활동

(의의) '아차사고'란 생명·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산업재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사고를 말하며,
- 수차례의 아차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통상 산업재해로 이어짐

절차 예시

① 아차사고 보고(작업자 ▶ 관리자 ▶ 안전보건담당자)

② 아차사고 원인 분석(작업자 & 관리자 ▶ 안전보건담당자)

③ 아차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안전보건담당자, 작업자·관리자 참여)
 *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시에는 사업장 내 동종·유사 위험요인을 함께 검토

④ 아차사고 재발방지 대책 보고(관리자 & 안전보건담당자 ▶ 경영자)

⑤ 아차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 지시(경영자 ▶ 관리자 & 안전보건담당자)

실행전략 _ 3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파악합니다

실행방법

- 사업장 내 모든 기계·기구·설비를 파악하고 위험 유무를 파악합니다.
 * 새로운 기계 등을 구매할 때는 안전하게 설계된 제품을 선택합니다.(설계를 통한 예방 원칙)
- 산업재해, 아차사고가 발생한 기계는 반드시 위험요인으로 분류합니다.



실행전략 _ 4

유해인자를 파악합니다

- ✦ 화재·폭발·누출의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과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등을 파악합니다.
- ✦ 화학제품의 경우, 반드시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를 확인합니다.

실행방법

- 화학제품 제조·수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있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정보, CAS번호를 확인합니다.
 * 화학물질별 정보는 www.msds.kosha.or.kr. / MSDSinfo에서 확인
 - 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별표1*에 해당한다면 유해인자입니다.
 * 해당 고시에 따른 노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건강에 위해를 야기
- 소음·진동·방사선·기압·기온 등 물리적 인자가 적정 수준인지 확인합니다.
- 감염병 등 생물학적 인자*와 근골격계 부담작업, 직무스트레스 등 인간공학적 인자를 확인합니다.
 * 혈액매개 감염인자, 공기매개 감염인자, 곤충·동물매개 감염인자

실행전략 _ 5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위험장소와 작업별 위험요인을 조사합니다.

실행방법

-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을 조사할 때는 현장 작업자가 반드시 참여합니다.

-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정형작업, 비정형작업으로 구분, 68p 참고)은 '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및 '재해유형*'과 연계**하여 파악합니다.

 * 떨어짐, 끼임, 맞음, 부딪힘, 깔림·뒤집힘, 화재·폭발·누출, 질식, 폭염 등

 ** 예시 • 사출성형기(위험기계) 수리작업(비정형작업) 시, 끼임 재해 발생 가능
 • 비계(위험장소)에서 거푸집 설치작업 시, 떨어짐 재해 발생 가능

- 작업환경이 수시로 변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을 공정의 변화*에 맞춰 계속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 터파기 ▶ 흙막이 지보공 조립 ▶ 기초바닥 공사 ▶ 철골 설치 ▶ 철근 조립 ▶ 거푸집 조립 ▶ 콘크리트 타설 ▶ 마감 ▶ 내부 인테리어

 ** 예시 ① (계획·설계) 건설공사 계획·설계 단계에서의 유해·위험요인 검토(발주자·설계자)
 ② (시공계획 수립) 주요 공정별 위험성평가(연간·월간)
 ③ (작업 전일) 단위작업별 사전 위험요인 확인(일일)
 ④ (작업 직전) 작업 전 안전미팅(TBM)을 통한 위험요인 재확인

⚠ 현장에서 발견된 안전보건관리 문제

- ☑ 안전보건조직 부서장의 직급이 공장장보다 낮아 안전활동에 소극적
- ☑ 공장장의 안전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성과반영 비율 (생산성 40%, 수익성 30%, 안전 10%)
- ☑ 안전담당 인력 부족(상시근로자 수 3천 명에 안전관리자 2명)
- ☑ 안전장치가 설비별로 상이하게 설치, 작업자 이해 부족 및 정기점검 부재

0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실행전략 _ 1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예측하여 위험요인별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실행방법

- 발굴한 위험요인은 유형별*로 분류하여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① 위험기계 등 ② 유해인자(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생물학적 인자)
 ③ 위험장소(떨어짐, 맞음, 깔림, 부딪힘, 밀폐 등) ④ 작업형태

- 각각의 위험요소에 대해 '산재사고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예측하여 위험의 정도를 평가**합니다.(위험성 추정)

 * 재해의 규모(재해자 수)와 사망, 중증 부상 및 질병 등 재해의 정도로 판단

 ** '위험성 평가' 기법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및 '위험성평가 지침해설서'(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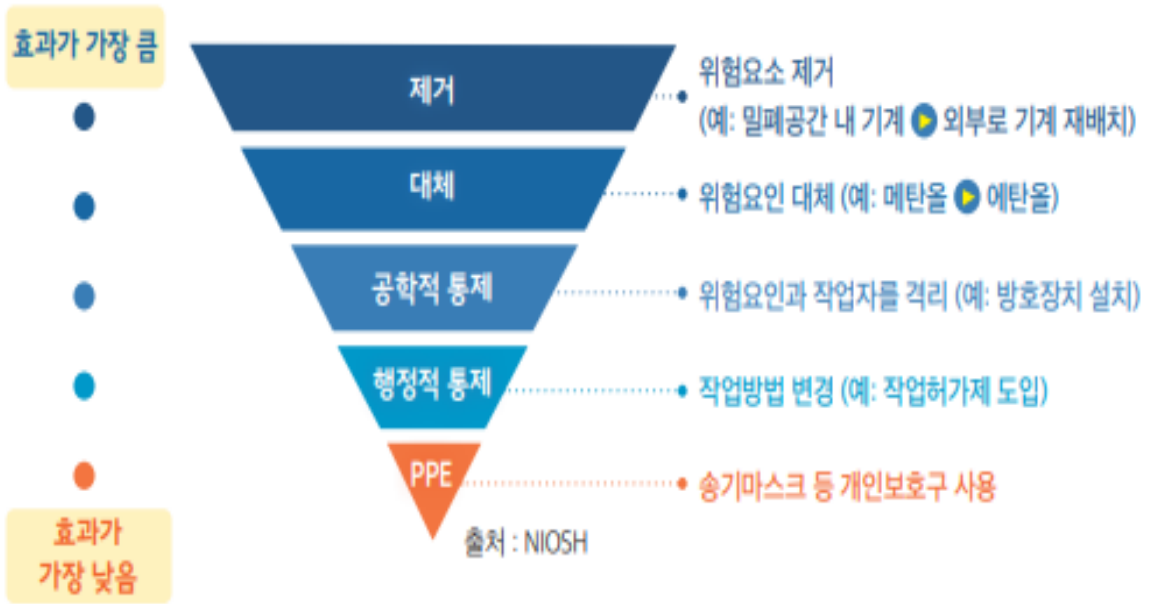
-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요소별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실행전략 _ 2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합니다

✦ '제거 ▶ 대체 ▶ 통제 ▶ 개인보호구' 순으로 검토합니다.

실행방법



- 위험요인별 제어방안은 제거 ▶ 대체 ▶ 통제 순으로 검토합니다.

실행전략 _ 3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확정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합니다.

✦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이행합니다.

실행방법

- 위험요인별 '위험의 정도' 및 '가능한 복수의 방안'을 정리합니다.
- 위험요인별 방안을 결정할 때는, 효과가 가장 높은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기술 부족 등 현실적 측면도 고려합니다.
- 현실적 이유로 근본적인 개선(제거·대체)이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적인 방안(공학적·행정적 통제 및 개인보호구)으로 관리합니다.
- 위험요인별로 선택한 방안이 '작업자가 실수하거나 기계·기구 등이 고장'이 나더라도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이 결정되면 자원(예산·인력 등) 배정방안도 마련합니다.
- 종합적인 대책이 확정되면,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이행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중대재해 절반은 막을 수 있다

Part 1 주요 재해유형별 기본적인 안전조치

1 떨어짐 재해 예방

❶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에 안전난간, 덮개, 추락방호망(Safety net) 등 추락방지 설비를 설치합니다.

❷ 강관비계가 아닌 '시스템비계*'를 사용합니다.

* 공장에서 각 부재를 표준규격으로 생산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안전성 확보 가능

❸ 시스템비계 설치가 어려운 이동통로 등에는 '안전대 부착 설비'와 '추락방호망(Safety net)'을 설치합니다.

❹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지붕 위 작업 시에도 안전발판, 안전대 부착설비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합니다.

❺ 작업 전 관리감독자는 '안전대 부착 설비'와 '추락방호망(Safety net)'을 점검하고(처짐, 풀림, 고정 등), 작업자들이 안전대를 착용하게 합니다.

❻ 모든 작업자는 언제나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중·소규모 건설현장(50억 원 미만)은 시스템비계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콜센터 ☎1644-4544

2 끼임 재해 예방

위험기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편 제1장을 참고

❶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방호조치,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검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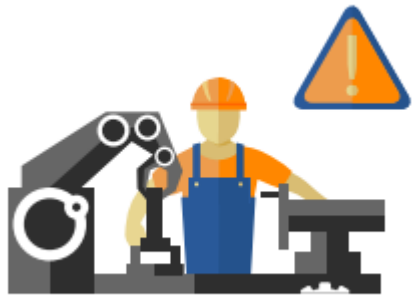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기계·기구 관리」 참고(70p)

❷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체인 등 끼임 위험이 있는 위험기계·기구는 덮개, 울 설치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❸ 위험기계·기구의 정비, 수리 및 청소 등 비정형작업 전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스위치 잠금조치 및 표지판(조작금지)을 설치해야 합니다.

* 「비정형작업 재해예방 기법」 참고(68p)

❹ 위험기계·기구는 표준작업절차를 마련하고, 수시로 방호장치 및 작업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화재·폭발 재해 예방

화학물질별 위험성과 관리체계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확인

❶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내 위험물 현황을 파악하고 작업 절차를 수립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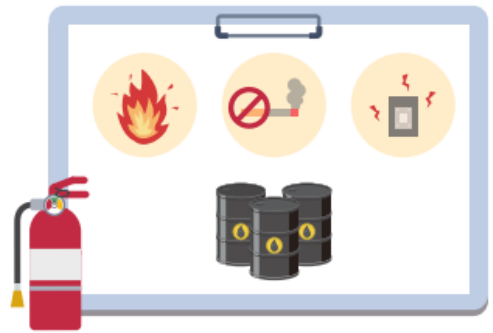
*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등

❷ 배관·용기 화기작업 시에는 내부의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고 가스 및 분진 농도를 측정하여 위험물이 없음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❸ 용접불티 등이 비산되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가연물을 제거하고,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를 설치합니다.

❹ 작업 중에는 감시인을 배치하고 소화기구를 비치합니다.

❺ 비상사태 시에는 감시자의 안내에 따라 대피합니다.(가능한 경우에는 비상조치 후 대피)



4 질식 재해 예방

최근 10년 간(2011~2020년) 밀폐공간 질식 재해자 316명 중 168명 사망(53.2%)

❶ 밀폐공간에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여 질식위험을 경고하고, 허가받은 사람만 출입하도록 합니다.

❷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는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 상태를 확인합니다.

* (적정공기) ① 산소 18.0 ~ 23.5% ② 황화수소 10 ppm 미만 ③ 탄산가스(이산화탄소) 1.5% 미만 ④ 일산화탄소 30 ppm미만

❸ 밀폐공간 작업자는 송기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합니다.

❹ 밀폐공간 작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기하며,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합니다.

* 감시인은 이상 상황 발견 시, 즉시 구조요청을 하고 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❺ 밀폐공간 작업 중 이상 상황 발생 시에는 119에 신고하며, 송기마스크 착용 없이 진입하지 않습니다.

* 작업자 구조를 위해 송기마스크 없이 밀폐공간에 진입했다가 사망한 사례 다수

▶ 송기마스크 없이 밀폐공간에 진입하지 않도록 교육·훈련 철저



실행전략 _ 4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 각 작업자는 구체적인 위험요인 제거·대체 또는 통제방안을 이해합니다.

✦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합니다.

실행방법

-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인지하게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 다양한 개인보호구의 착용 시점과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개념과 전반적인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 교육·훈련 내용은 동영상 및 문서로 정리하여, 사내 인트라넷 등을 통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급박한 위험에 따른 대응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 경영자·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경영행위의 필수요소 중 하나로 생각하고 역할을 수행합니다.
- 경영자·관리자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별 통제방안을 구체적으로 숙지해야 하며, 지휘·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안전미팅(TBM)'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험작업 시작에 앞서 기본 안전수칙을 상기시키고 점검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사항을 교육자료에 포함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관련 사항은 다음장 참고)
-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을 할 때는 사업장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05 비상조치계획 수립

실행전략 _ 1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해요인을 파악합니다.
- 사업장 단위로 재해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실행방법

- 위험요인별로 어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인은 '재해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사업장마다 발생 가능한 재해 상황이 다르므로 사업장별로 재해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실행전략 _ 2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급박한 위험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실행방법

- 작성된 재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 조치계획을 수립할 때는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합니다.
- 조치계획에는 상황보고·전파(내·외부), 임시적인 위험요인 제거방안, 근로자 대피방안, 추가피해 방지방안 등을 포함합니다.

알아둡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서 등(119)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소방기본법 제19조)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며, 지체 없이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실행전략 _ 3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합니다

✦ 비상조치계획을 이행하고 검증하며, 주기적으로 반복합니다.

실행방법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구성원별 역할과 대피방법을 교육합니다.
- 비상조치계획 이행을 위한 장비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훈련합니다.
- 사업장별 조치계획 훈련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합니다.
- 훈련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조치계획을 개선합니다.



0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실행전략 _ 1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 계약에 앞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합니다.

✦ 계약할 때는 충분한 비용과 기간을 보장합니다.

실행방법

-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에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명시합니다.
 * (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출, 표준작업계획·작업허가제 등 사내 작업절차 준수, 정기 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비상훈련 참여,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여, 안전보건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습니다.
-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치방안을 미리 마련해 놓습니다.
-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을 할 때는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비용과 작업기간* 등을 보장합니다.
 * (예) 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기간에 관한 기준을 포함

실행전략 _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실행방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통해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에 대한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 사내 상주 협력업체 등이 아닌 공급업체 소속 직원 등의 실수로도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142p 화재·폭발 사고사례 참고)
-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Suppliers and vendors)에게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알립니다.
- 안전보건 관련 정보제공, 공식절차(작업 전 안전미팅, 안전제안 활동) 등은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 사업장 내 모든 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하며,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은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합니다.
- 비상조치계획의 수립 및 이에 따른 훈련에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업장 내 위험요인이 제거·대체되었거나 통제되어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이 확보되고 있는지, 확인·평가하고 개선합니다.
-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 등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 및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07 평가 및 개선

실행전략 _ 1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실행방법

- 본사, 사업부서별, 사업장별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합니다.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합니다.

 * '사망자 제로 달성' 등 최종적인 목표만을 설정할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노력 없이 운에 맡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 정기적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며, 모든 구성원에게 공개합니다.
- 설정한 목표에 대한 평가 결과가 양호함에도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목표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점검하여 개선합니다.

실행전략 _ 2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합니다

✦ 현장에서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체계의 근원적인 문제를 찾는 데 집중합니다.

실행방법

-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위험요소가 적절히 제거·대체되었거나 통제되고 있는지, 정해진 절차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주요 공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를 중심으로 점검팀을 구성하고, 현장의 안전작업절차가 위험요인 관리에 적정한지 평가합니다.
-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마련,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관리 등 핵심요소 전반을 점검하고, ① 면담 ② 서류확인 ③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발생 시에는 특별점검을 통해 사고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 단, 아차사고에 대한 특별점검 시에는 징계 등 부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확인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전파합니다.

실행전략 _ 3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합니다

실행방법

- 평가 및 점검에서 발견된 문제는 분기별(또는 반기)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경영자는 필요한 자원을 배정하고 이행합니다.
-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point

연 1회 정기 자체감사 통해 안전평가 및 개선
- 소수정예 감사팀이 전국 8개 사업장 교차 감사로 감사결과 신뢰도 확보

사업장 간, 부서 간 Cross Audit(교차감사) 시행
- 감사원의 업무역량 향상 및 상향 평준화된 감사원 양성 도모

역량 있는 감사원 양성과 훈련
- 경력, 전공, 자격, 교육 등 기준점수 60점 이상자 선정

분기별 1회 자율적인 내부감사로 부서별 안전평가 및 개선
- 각 사업장의 정·부감사원이 부서별 안전관리사항 감사

2023년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시설안전 · 보건관리 종합계획서

1. 안전보건 경영방침

세화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운영 전반에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1.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계획을 수립하여 충실하게 이행한다.
2.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여 사전에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안전보건 사고 방지를 위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3.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도록 하고,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종사자 등과 유기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한다.
5.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한다.
6. 각종 안전보건법에 의거 종사자 및 이용자를 시설이나 작업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7. 기본 안전점검표를 토대로 주기적인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체없이 문제점을 개선하여 안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8.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9.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한다.

안전보건경영 방침

세화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안전보건경영이
모든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임을 표명하고
안전보건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실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선언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2.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지속 개선하여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 이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킨다.
3.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4. 사회복지시설에 적합한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5. 전 임직원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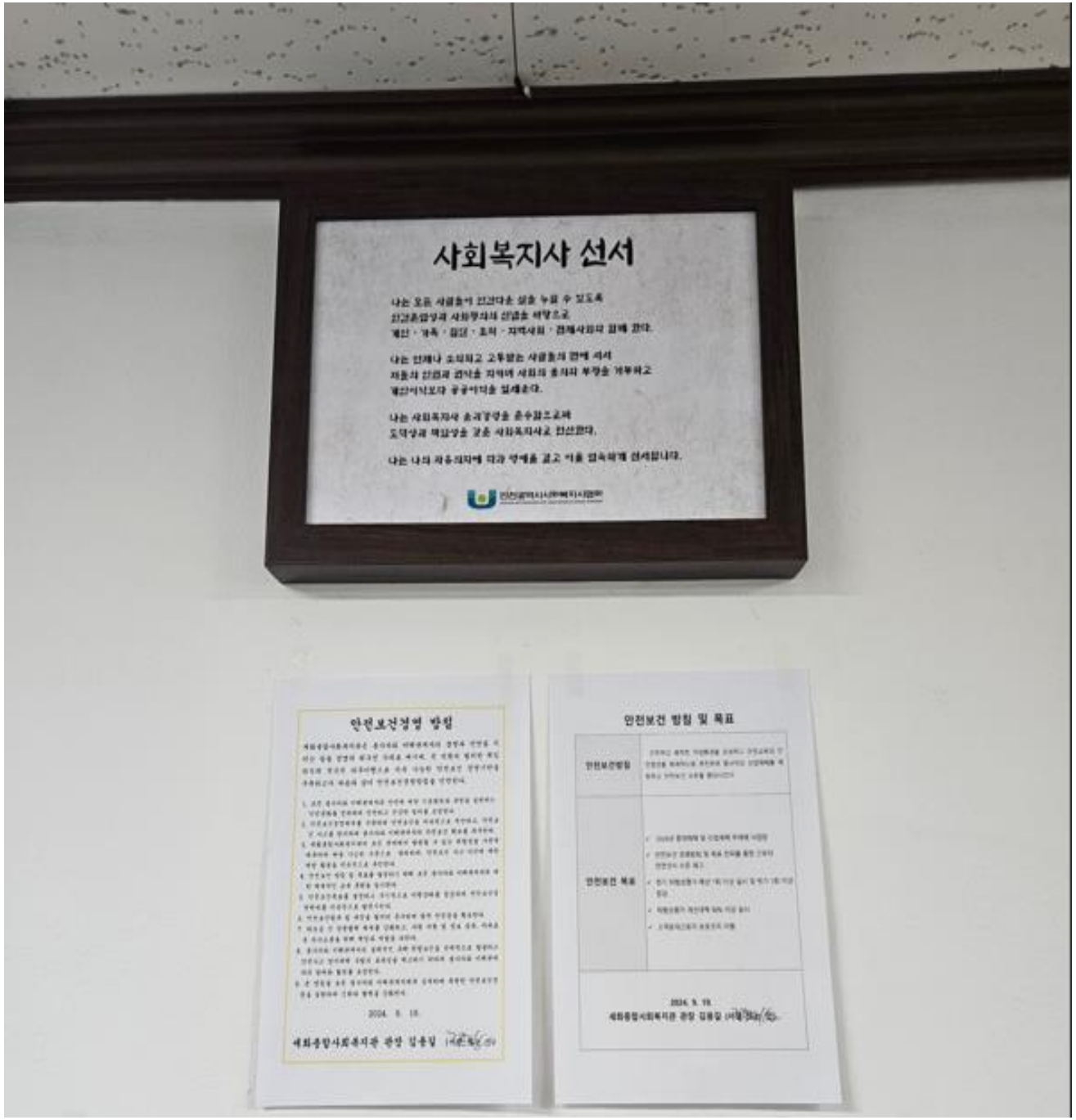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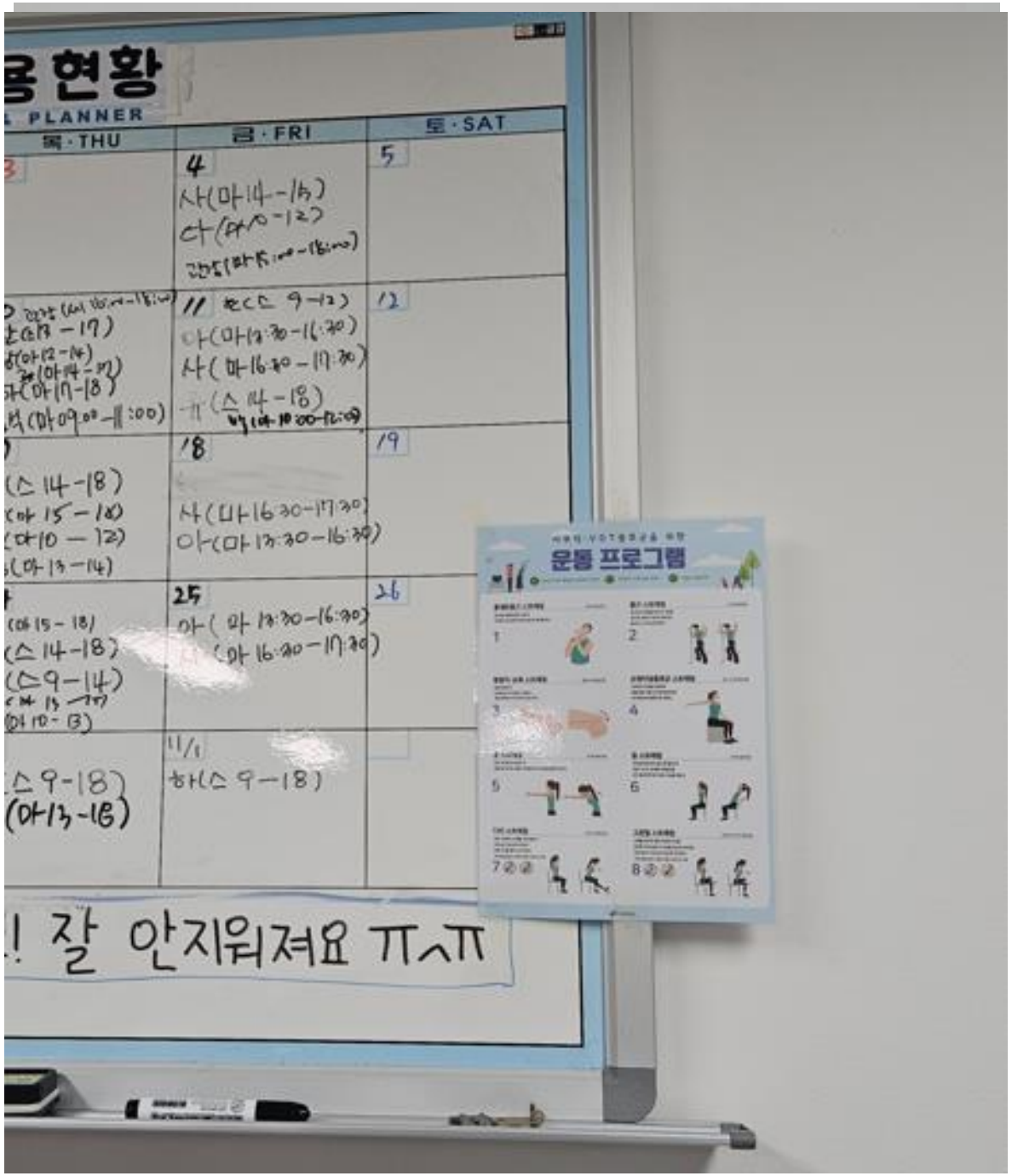
2024.9.19.

세화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용길 (서명 또는 인)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안전보건방침	세화종합사회복지관은 경영활동 전반에 전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안전보건 목표	✓ 2024년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무재해 사업장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전파를 통한 근로자 안전의식 수준 제고 ✓ 정기 위험성평가 매년 1회 이상 실시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 위험성평가 개선대책 90% 이상 실시 ✓ 정기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100% 이행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이행

2025. 9. 19.
세화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용길 (서명 또는 인)


사회복지사 선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권존중정신에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 가족 · 집단 · 조직 · 지역사회 · 전체사회의 발전에 힘쓴다.
나는 언제나 도움이고 고투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자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켜며 사회의 조치자 부정을 개투하고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한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위에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안전보건경영 방침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 목표

현황
PLANNER
목 · THU
금 · FRI
토 · SAT
운동 프로그램
잘 안지워져요 ㅠㅅㅠ

3. 안전보건 관리 조직

직책	직위 및 성명	역할
경영책임자	관장 김용길	·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 책임과 권한 승인 · 안전보건 규정, 지침, 매뉴얼, 계획 승인
안건보건관리책임자	부장 백혜원	· 안전보건 경영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 안전보건 교육/점검 시스템 계획 및 점검 · 중대재해 사고접수·원인조사·대책수립
안전보건관리자	과장 제아름	· 안전보건 이행 및 총괄 점검, 시정조치 · 안전·보건 교육 수립 및 시행 확인
안전관리자	시설관리 윤상록	· 시설안전종합계획 수립 · 화재예방, 모의훈련 계획 및 실행 · 시설안전점검 및 시정조치 확인 · 이해관계자의 안전에 관한 현안사항처리
보건관리자	과장 제아름	· 감염병 관리 및 예방대처계획 수립·이행 · 보건점검 및 시정조치 확인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렴 및 공유 · 보건에 관한 현안 사항 처리

4. 안전보건 교육계획

교육명	교육시기	교육내용	대상
모의훈련	4월 12일 11월 22일	· 화재발생 가정 피난 훈련 진행	직원 및 이용자
응급대처교육	7월 중	· CPR교육 (어린이시설안전교육으로 대체) ※시 및 구 일정 확인	직원
	3월 20일	· 화재예방 및 화재시 대처방안 교육 진행 · 사고상황별 대응조치방법 교육 (추락사고, 끼임, 베임, 쇼크, 일사병, 열사병 전기감전, 화상, 가스누출 등)	직원 및 이용자
보건교육	4월 17일 9월 11일	· 감염병 예방 교육 · 발생시 대처교육	직원
		· 감염병 예방 및 발생시 대처 요령 관내 게시	이용자

5. 시설안전점검계획

1). 정기점검

- 하절기 : 수해 및 장마철 대비 정기점검 5~6월 연1회
- 동절기 : 난방 및 화재, 해빙기 시설안전점검 1월,11월 연2회

※ 시설물 전체 정기점검은 대한주택공사 연수1 주공 관리사무소 실시기간을 준한다.

2) 일일/월별 점검

- 건축물, 가스, 전기, 시설별 기자재, 상수도 등 일일 점검 및 기록
- 시설관리자는 수시 순찰하여 각종 시설을 점검.확인한 후 시설관리 일지에 작성하고 이상 발생 시 즉시 부서장 및 시설장에게 보고 후 시정조치를 한다.
- 최종 퇴근자 보안 점검 확인
- 난방기기 주변 인화성 물질 제거
- 동절기에는 난방 시설 가동으로 인하여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순찰자는 난방 기기(난로과열)등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
- 복지관 각종 시설물 관리상태 점검 및 기록
- 복지관 위생 및 청결상태 세부적으로 일일 점검 및 기록

3) 일상점검

- 각종 시설을 세부적으로 점검 확인한 후 이상발생시 즉시 부서장 및 시설장에게 보고 후 시정조치
- 승강기 안전검검은 전문기관(현대엘리베이터)에 위탁 월1회 정기점검

4) 법정점검

- 연 1회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 연 1회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연 2회 소방안전정밀점검, 작동점검
- 연 1회 한국가스안전공사 정기점검

Ⅱ 소방계획

1. 화재예방 특별 활동 기간

- 2022. 01. 04 ~ 2022. 03. 31 (3개월)
- 2022. 11. 01 ~ 2022. 12. 31 (2개월)

2. 화재예방 교육(모의훈련)

- 일시 : 연간 2회
- 장소 : 강당 등
- 대상 : 종사자 및 지역주민
- 내용 :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화재등 재난대응 모의훈련 등

3. 시설관리 및 방화관리 책임자 지정

- 안전관리 책임관 : 시설장 김용길
- 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 정 → 김용길, 부 → 윤상록
- 방화관리 책임자 : 정 → 주택관리공사 주공1단지 방화관리자 위임, 부 → 윤상록

4. 소화장비 비치 및 유지관리

1) 초기대응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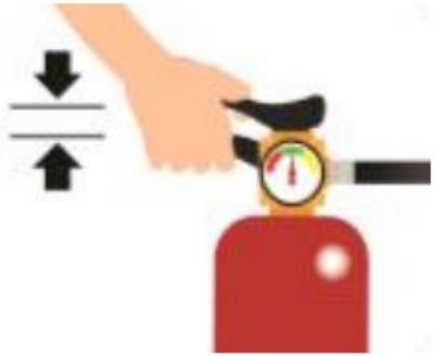
구 분	종류(형식)	위치(수량)	비 고
소화기	수동식소화기 3.3Kg	33개	지하 소방시설 누수 등 확인
소화전	소화전	각층(1, 2, 3층)	

2) 소화기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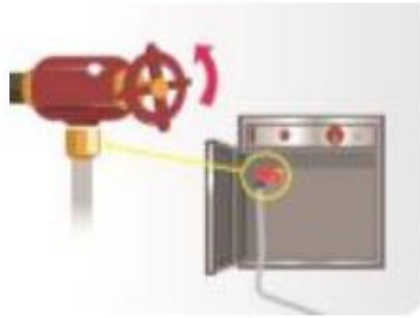
층수	비치장소	소화기종류(소화기명)
1층	조리실	분사식 자동확산 소화기3.0Kg
	뱅크 창고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층수	비치장소	소화기종류(소화기명)
	조리실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주민사무실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2층	로비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강당 좌측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강당방송실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강당출입구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강당피아노옆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건강관리실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관장실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도서관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로비강당입구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로비사무실입구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사무실 문서고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사무실 탕비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사무실현관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기부식품팀실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자원봉사실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태권도실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프로그램실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프로그램실입구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피아노실	수동식소화기 분말(ABC) 3.3Kg
	로비	투척용소화기

5. 소화기 사용법

1.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밖으로 대피할 때를 대비하여 문을 등지고 소화기를 가져와서 몸통을 단단히 잡고 안전핀을 뽑는다.	
2.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해 가까이 이동한다.	
3. 손잡이를 꽉 움켜쥔다.	

6. 소화전 사용법

1. 2인 1조로 사용을 하며 2명 중 1명이 먼저 소화전함의 문을 열고 호스와 노즐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2. 호스를 밖으로 꼬이지 않도록 불이 난 곳까지 길게 늘어뜨린 후 노즐(관창)을 잡고 방수자세를 취한다.	
3. 다른 한사람이 밸브를 돌려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뛰어가서 호스를 잡는 것을 도와준다. 4. 노즐의 끝을 돌려 물의 양을 조절해가며 불을 끈다.	

7. 초기대응 실패 후 행동하여야 할 요령

1) 초기진화에 실패하였을 때는 인명피해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2) 대피로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진압 활동을 즉시 포기하도록 한다.

8. 화재를 알리는 방법

1) 비상연락체계 구축

- 비상 연락 1시간 이내 복지관에 집결
- 유관기관 비상 연락을 수시 가동할 수 있는 연락체계 수립

구 분	대응방법 및 절차
화재경보	**화재경보방식(■일제경보, □우선경보)에 따라 화재경보** ■ 일제경보방식 : 전층[1 ~ 3층] 화재경보 □ 우선경보방식 : 발화층+직상층(___층)+지하층 화재경보
상황전파	**화재상황 전파 시 다음 방법에 따라 상황전파** ■ 육성 ■ 경종 ■ 비상방송(자동/수동) ■ 시각경보기 ■ 자위소방대 비상소집(비상방송 및 비상연락망) ☎ 종합방재실(수신반) : _____ / 기타 : _____
화재신고	이재숙(통보연락반)

2) 내부 비상연락 체계

구 분	소 속	성 명	개별임무
대 장 (지휘반)	관장	김용길	화재 및 재난시 응급조치에 대한 지휘 및 지시
부대장 (지휘반)	운영지원팀	윤상록	비상연락망 가동, 재난방송 청취 및 전파
통보연락반	운영지원팀	백혜원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통보연락
	운영지원팀	이재숙	119신고, 건물 내 화재발생 또는 재난발생 통보
	방과후교실	이미숙	119신고, 건물 내 화재발생 또는 재난발생 통보
진압반	지역조직팀	김승한	필요 장비를 동원하여 재난상황 극복
	사례관리팀	장동해	소화기, 관내 소화전을 사용하여 화재진압
	푸드뱅크	박윤호	소화기, 관내 소화전을 사용하여 화재진압
구조구급반	사례관리팀	제아름	부상자 응급조치
	사례관리팀	이진안	부상자 응급조치
	사례관리팀	임혜영	병원 긴급후송
	사례관리팀	김연주	병원 긴급후송
대피유도반	서비스지원팀	조아라	건물 내 이용자 대피유도
	서비스지원팀	최사랑	건물 내 이용자 대피유도
	서비스지원팀	조용태	건물 내 이용자 대피유도
	방과후교실	윤은미	방화문 폐쇄, 가스·위험물 등 제거
	방과후교실	김미경	중요물품 안전한 장소로 이동

3) 외부 비상연락 체계

구 분	유 선
인천공단소방서	723-5544
동춘소방파출소	813-2119
연수구청 복지정책과	749-7632
주공1단지관리사무소	811-0437
연수경찰서 (생활안전과)	453-0766
연수3동사무소	817-0278

구분	대응조치	대응절차
화재 발생	1. 119신고 2. 경보전파	1. 화재 목격자(육성으로 전파"불이야!") 2. 119 신고(화재발생 위치, 상태)
초기 소화 및 대피 활동	1. 소화기 이용한 초기진화 시도 2. 대피활동 지시 및 전개 3. 자위소방대 비상소집	1. 소화기 활용 초동 진화 실시 2. 대피유도 활동 지시 및 전개 3. 자위소방대 중심으로 진화작업 실시
초동 진화 작업	1. 초동 진화작업 실시 2. 대피활동 3. 인명 구조활동	1. 소화기, 소화전으로 초동 진화작업 실시 2. 소방대 도착전까지 대피유도 활동 전개 3. 인명 구조활동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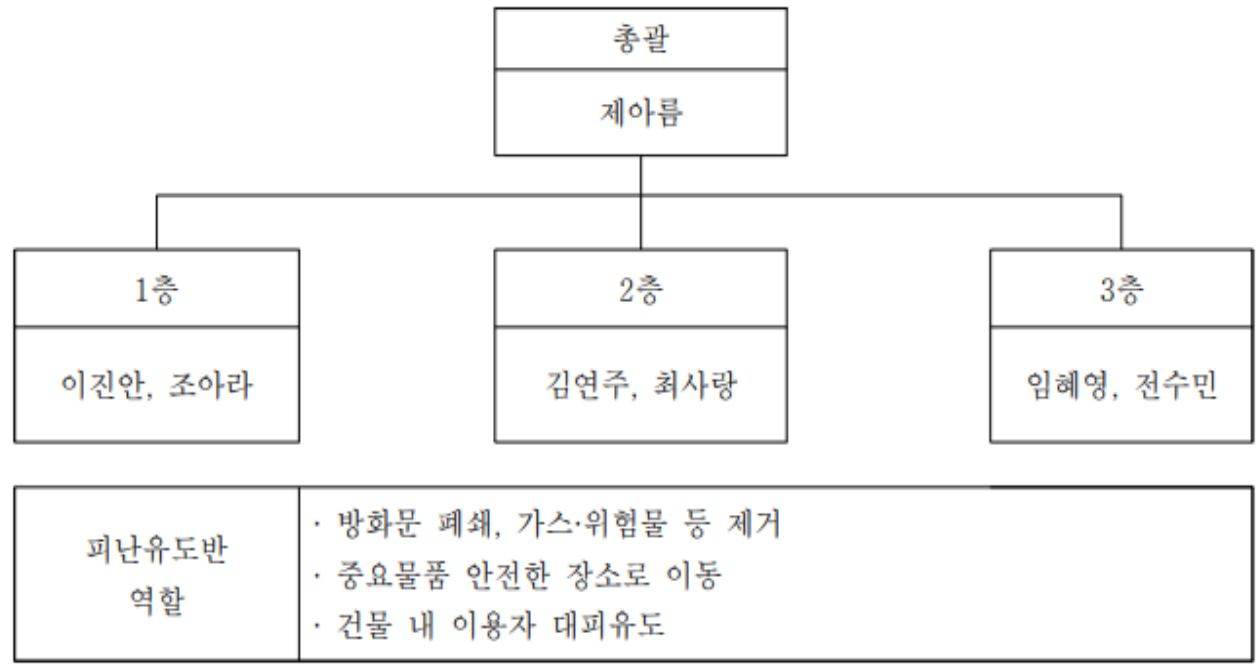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4">피난절차 및 방법</th></tr>
<tr><td>화재경보</td><td colspan="4">■ 경종(■전층 ■부분층) □ 비상방송설비 □ 기타(　　)</td></tr>
<tr><td>피난인원
(동일시간
동시이용)</td><td colspan="4">□ 상시거주(___명) □ 상시근무(20명) □ 유동인원(70명)
<table>
<tr><th>층(구역별)</th><th>피난인원</th><th>층(구역별)</th><th>피난인원</th></tr>
<tr><td>1층</td><td>10</td><td>주민사무실, 1층조리실</td><td>10</td></tr>
<tr><td>2층</td><td>60</td><td>사무실, 강당, 프로그램실</td><td>60</td></tr>
<tr><td>3층</td><td>40</td><td>방과후교실</td><td>40</td></tr>
</table>
□ 재해약자 현황(해당사항에 ✔ 표시)
<table>
<tr><th rowspan="2">□노인</th><th rowspan="2">□영유아</th><th rowspan="2">☑어린이</th><th rowspan="2">□임산부</th><th colspan="5">장애유형</th></tr>
<tr><th>☑이동</th><th>□시각</th><th>□청각</th><th>□언어</th><th>□인지</th></tr>
<tr><td>50</td><td></td><td>40</td><td></td><td>90</td><td></td><td></td><td></td><td></td></tr>
</table>
* 노인[65세↑], 영유아[6세↓], 어린이(13세↓), 임산부 및 장애인</td></tr>
<tr><td>피난경로</td><td>□ 제1피난로</td><td colspan="3">계단 → 1층 외부</td></tr>
<tr><td></td><td>□ 제2피난로</td><td colspan="3">계단 → 3층 베란다 → 구조대(경사식)</td></tr>
<tr><td></td><td>□ 옥상피난</td><td colspan="3">☑ 옥상출입[☑ 상시개방 □ 상시폐쇄(잠금장치)]
□ 자동개폐장치(□유□무) ☑ 옥상광장(☑유□무)</td></tr>
<tr><td>피난보조</td><td colspan="4">
<table>
<tr><th>재해약자</th><th>피난동선</th><th>피난방법</th></tr>
<tr><td>아동
(방과후/피아노)</td><td>3층 베란다 →
구조대(경사식)</td><td>윤은미(보육교사)의 유도로
피난 실시</td></tr>
<tr><td>노인(노인대학)</td><td>2층 → 계단 → 1층 또는
3층베란다</td><td>조아라, 김연주의 유도로
피난 실시</td></tr>
</table>
대피유도반에 편성된 인원을 중심으로 피난을 유도한다.
연기가 발생할 시 수건 등을 물에 적시어 실내에서 밖으로 나오도록 안내한다.
복도에 연기가 가득차 나오지 못하는 상황일 때는 프로그램실로 임시 대피시킨다.
대피한 이용자들의 상태를 살피며, 안전한 곳에서 구조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한다.</td></tr>
<tr><td>집결지</td><td colspan="4">단지내 주차장(101동 앞)</td></tr>
</table>

3. 피난유도 조직

1) 피난유도 조직은 피난 대비반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응급구조반을 부로 운영한다.

2) 응급구조반은 피난유도반과 함께 피난을 유도하며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한다

3) 피난유도반 조직 및 역할



시설관리규정

제1장 시설관리

제1조 (목적)
복지관시설유지보수 및 관리업무와 방화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 시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들의 안전도모 및 시설 재산을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세화종합사회복지관의 모든 시설과 전 종사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휘감독)
이 계획에 의한 안전관리 및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안전관리 담당자는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관리자 및 직원을 지휘·통솔할 수 있다.

제4조 (시설안전관리자의 업무)
1. 시설안전관리를 위한 연간 종합계획 수립
2. 소방시설을 포함한 복지관 전 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3. 수시 및 정기 시설 안전점검
4. 시설 위생 및 청결관리
5. 비상연락체계 확립 및 응급조치반 편성·운영
6. 재난 및 소방훈련 교육
7. 화기취급의 감독
8. 3년에 1회 이상 시설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련된 교육 수료
9. 그 밖의 시설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제5조 (안전검사)
1. 매년 1회 주기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적 대행업체에서 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매년 1회 주기로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법적 대행업체에서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매년 1회 주기로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법적대행 업체에서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승강기 정기검사는 매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20일 이전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검사를 신청하여 검사를 완료하도록 한다.
5. 위의 1,2,3항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는 주공1단지 관리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복사하여 시설에 보관한다.

제6조 (안전점검)
1. 하절기 수해 및 장마철을 대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동절기 화재 및 해빙기를 대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각종 시설물에 대한 일일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4. 건축, 소방, 전기, 정화조 등 관리소와 연계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7조 (시설유지보수)
1. 시설관리자는 제5조에 따른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문제가 발생했을 시 즉시 보완 또는 개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결과 고장 또는 성능미달의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에게 보고 및 보완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교육)
안전사고 대비 및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교육 또는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비상연락체계 및 응급조치반 편성)
1. 시설관리자는 비상사태 발생 시 1시간 이내에 복지관에 집결 할 수 있도록 직원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직원 외에도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 가동할 수 있는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응급조치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각 반(팀)별 응급상황시 임무를 정하여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4. 시설관리자는 제 9조에 해당하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연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가입)
1. 복지관은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책임보험 또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수행기관 : 노무법인우광)
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점검 및 컨설팅 추진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함

컨설팅 개요

컨설팅 대상	5~49인 사업장
수행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지정 안전보건전문기관 '노무법인 우광'
컨설팅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컨설팅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7대 핵심과제 구축 지원)
컨설팅 방법	'24년 4월 ~ 11월 중 5회에 걸쳐 사업장 방문하여 대면 미팅 실시
컨설팅 비용	5~29인 : 무료 (정부지원금 100%) 30~49인 (수수료 3만원 /회), 50인이상 (수수료 12만원 / 회) 자부담금은 1회차 컨설팅 종료 시 컨설팅 기관에 납부. 다음 회차 시작 전까지 미납시 컨설팅 지원종료

법령에 근거한 분야별 점검 및 컨설팅 추진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상 사업주 의무이행사항

1.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해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발굴
2.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 감소 대책 마련
3. 경영자 리더십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종사자에게 공유
4. 근로자참여
 : 종사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 마련
5. 비상조치계획
 :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등 시나리오별 조치계획 마련
6.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관리
 : 수급인 평가기준, 절차, 비용기준 마련 후 점검
7.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권한 및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정부지원 컨설팅 추진내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업주 의무준수 사항을 컨설턴트가 지원함>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작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기계기구설비 관리대장 제작
- 유해위험물질 목록.제작
-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작
-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서
- 안전보건체계 조직 구축
- 작업 전 안전미팅 회의록 제작
- 안전신고 및 제안제도 운영 지원
- 중대산업재해 매뉴얼 제작
- 비상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제작

2024년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종합보고서

사업장명: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24. 11 .

수행기관명: 노무법인 우광

<목 차>

I. 총평

II. 사업장 안전보건 현황 파악

III. 컨설팅 및 개선 내용
1. 위험성평가 시범 실시
2. 위험성평가 직접 실시
3. 경영자 리더십
4. 근로자 참여
5.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6. 비상시 조치
7. 도급·용역근로자
8. 평가·확인 관리

IV. 향후 개선사항

V. 안전보건수준평가 체크리스트(55개) 결과

VI. 부록
1. 관련 법령 및 판례
2. 필요 서식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고객이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사진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표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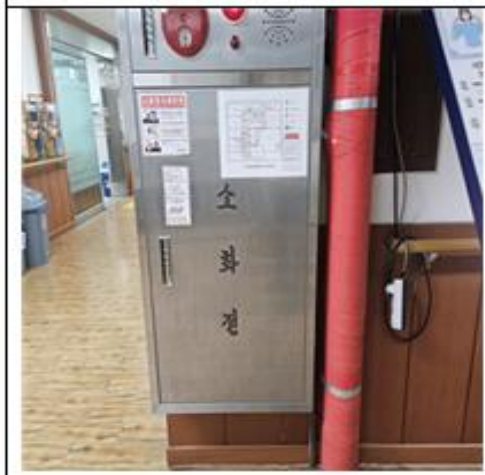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금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비상구, 소화전 앞 적치된 물건 제거 조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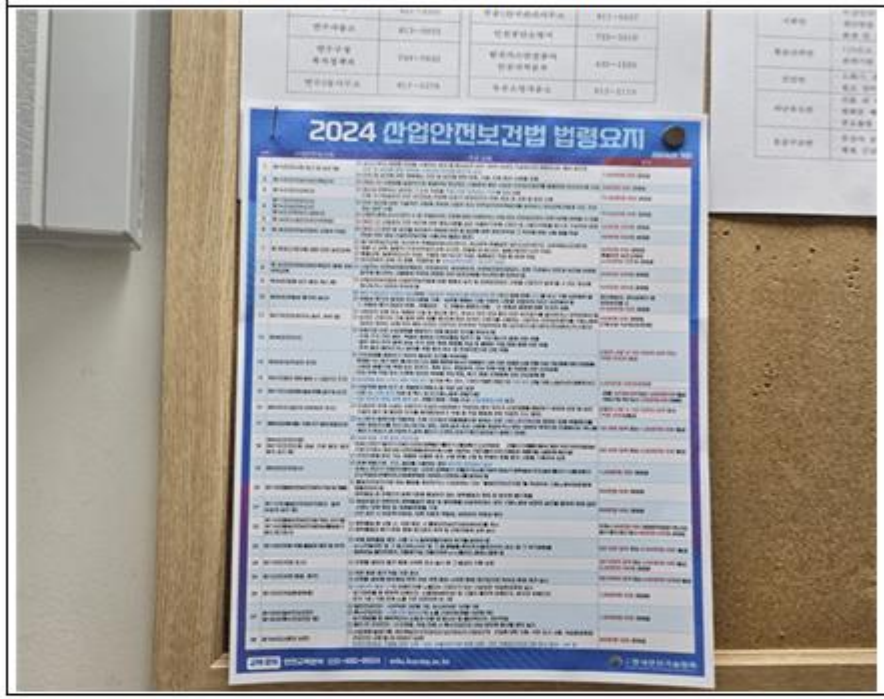


소화기 원래 위치로 이동 조치



법령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법령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


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 사진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사진


휴게시설의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휴게시설 사진


휴게시설 관리담당자 지정




2022년도 사회복지관 지표수 및 배점

2018년도 사회복지관 평가 지역규모·영역별 지표수 및 배점

평가영역		배점(%)	시설 유형별 지표 수(개)		
			구분	광역시	도(세종시 포함)
A. 시설 및 환경		4	4		
B. 재정 및 조직운영		4	4		
C. 인적자원 관리		28	11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사례관리	12	4		
	서비스제공	30	프로그램 제출수	7	6
			실지표수	3	3
			총지표수	21	18
	조직화사업	8	3		
E. 이용자의 권리		6	4		
F. 지역사회 관계		8	4		
총계		100	실지표수	37	37
			총지표수	55	52

* D.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총지표수=실지표수 x 프로그램 제출 수

2021년도 사회복지관 평가 지역규모·영역별 지표수 및 배점

평가영역		배점(%)	시설 유형별 지표 수(개)		
			구분	광역시	도(세종시 포함)
A. 시설 및 환경		4	3		
B. 재정 및 조직운영		30	13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사례관리	14	4		
	서비스제공	25	프로그램제출수	5	4
			실지표수	3	3
			총지표수*	15	12
	조직화사업	8	3		
D. 이용자의 권리		6	4		
E. 지역사회 관계		8	3		
F. 시설운영 전반		5	3		
총계		100	실지표수	36	36
			총지표수	48	45

* C.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 총지표수=실지표수 x 프로그램 제출 수

평가지표	A2. (전체공통) 안전관리	
평가목표	시설을 이용하기에 안전하도록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시설 특성에 맞게 안전관리계획서를 마련하고 있다.	
	② 매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③ 월 1회 이상 안전 관련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사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④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 및 부착하고 있다.	
	⑤ 시설 안전담당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고 있다.	
	⑥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가산점 적용)	
배점기준	· 우 수 (4점) : ①~⑤항목 중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 (3점) : ①~⑤항목 중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4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 (2점) : ①~⑤항목 중 3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 (1점) : ①~⑤항목 중 2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 가산점 (0.3점) : ⑥번 항목이 해당된다.	가산점

※ 필수항목 : ①, ②

□ A2-① 시설특성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서 마련

○ 근거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매뉴얼(SOP)_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3번 자료 참고

○ 대상기간 : 2020.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소방계획서와 피난계획서를 포함한 시설특성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서 마련

- 소방계획서 : 화재발생시 화재를 알리는 방법, 관련 기관이나 시설관리자에게 연락하는 방법, 소화시설 위치와 사용방법, 화재경보나 초기소화 실패한 후 행동하여야할 요령 등 포함
- 피난계획서 : 피난안내도 및 안내방송(전파) 내용, 피난유도 조직 구성 및 임무, 이용자 특성별 행동요령 제시, 실내에 피난하지 못한 이용자 색출 행동요령, 생활시설 이용자별 특성을 분류하여 피난유도 방법 구분(단순안내, 보호조치 등), 피난안내문 작성법, 피난안내도 작성방법 등 포함

○ 평가자료 : 안전관리계획서

SOP 106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1. 안전관리계획서 개요

① 소방계획서

-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여 비치한다.
- 작성된 소방계획서는 관리자나 이용자에게 알려 재난시 자신들의 임무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작성된 계획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소속원들이 재난시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도록 한다.

④ 피난 안내도 작성방법

- 시설의 층별 평면도를 그리고, 그 위에 피난방향을 표시한다.
- 소화기, 옥내소화전, 경보장치, 발신기 등이 있는 위치를 표시한다.
- 안내도 위치에서 피난 계단까지의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한다.
- 막다른 통로나 복도의 위치를 표시하고, 유도등 위치를 표시한다.
- 피난안내도는 실 입구나 계단 근처에 부착하여 둔다.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발신기/비상벨	시각경보기
			

SOP 107

사회복지시설의 공통 피난관리

XX 노인요양시설 3층 피난 안내도







1. 피난계획과 준비

■ 피난안내도 만들기

① 피난안내도 포함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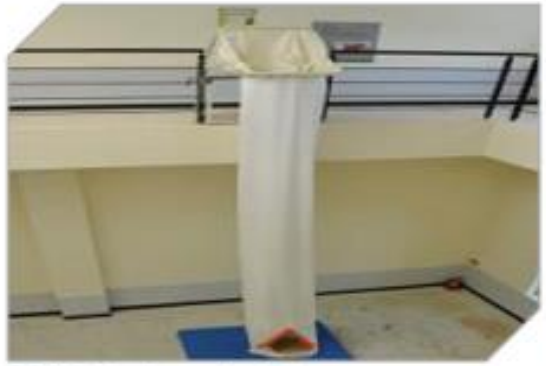
- 피난구 및 피난계단 위치를 표시한다.
- 출입구에서 피난구까지 방향표시 및 거리를 표시한다.
- 현재 위치에서 피난구까지 피난동선을 화살표로 표시한다.
- 초기소화를 위한 소화기, 소화전 위치를 표시한다.
- 피난구가 막히는 경우 대비하여 피난기구 설치 위치 표시한다.

② 피난안내도 그리기

- 피난안내도는 문자보다는 그림이나 다양한 표식을 이용한다.
- 각 층이나 동별로 시설 평면도에 따라 별도로 작성한다.
- 시설의 층별 평면도를 그리고, 그 위에 피난방향을 표시한다.
- 소화기, 옥내소화전, 경보장치, 발신기 등이 있는 위치를 표시한다.
- 안내도 위치에서 피난 계단까지의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한다.
- 막다른 통로나 복도의 위치를 표시하고, 유도등 위치를 표시한다.
- 피난안내도는 실 입구나 계단 근처에 부착하여 둔다.
- 피난안내도 예시

피난기구의 종류와 특징[9]

•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특성에 따라 사용 가능한 피난기구의 종류는 구조대, 경사로, 미끄럼대, 승강식피난기 등이 있다.



협착형 수직구조대 외형도



하강식 경사구조대



보호자 동반 피난이 가능한 안정감있는 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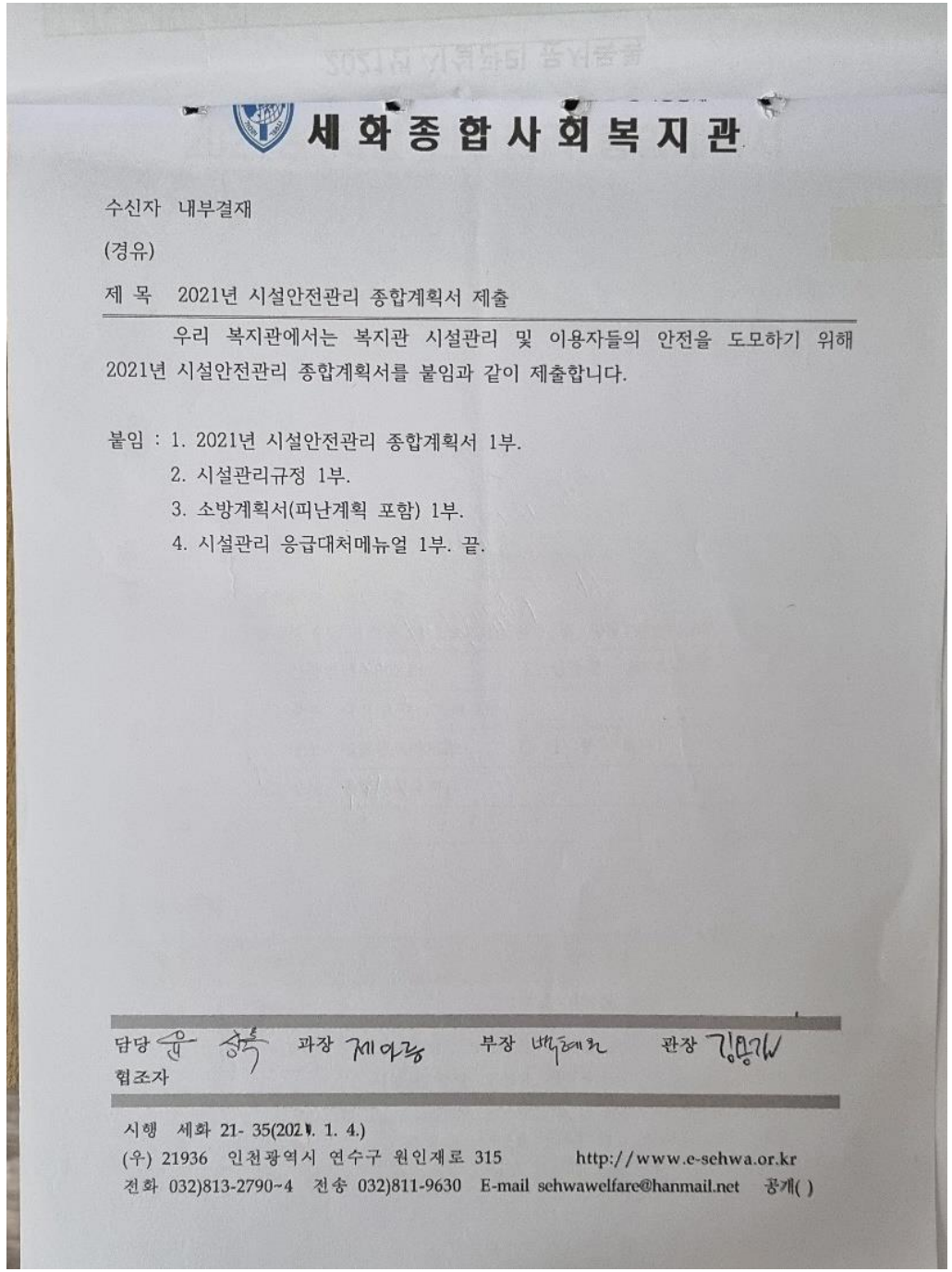
어린이도 두려움 없이 가볍게 탑승하는 장비



피난시설로 설치된 경사로



3층 어린이집에 설치된 미끄럼대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1년 시설안전관리 종합계획서 제출

우리 복지관에서는 복지관 시설관리 및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시설안전관리 종합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2021년 시설안전관리 종합계획서 1부.
2. 시설관리규정 1부.
3. 소방계획서(피난계획 포함) 1부.
4. 시설관리 응급대처메뉴얼 1부. 끝.

담당 [illegible] 과장 [illegible] 부장 [illegible] 관장 [illegible]
협조자

시행 세화 21- 35(2021. 1. 4.)
(우) 21936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15 http://www.e-sehwa.or.kr
전화 032)813-2790~4 전송 032)811-9630 E-mail sehwawelfare@hanmail.net 공개()

5. 대피유도반의 상황별 대응법

1) 초기 진화가 가능한 경우
- 화재지점의 이용자를 우선적 대피(화재 규모와 상관없이 실시)
- 화재지점에 이용자 접근 통제 및 피난로 확보/출입문 등 개방

2) 초기 진화에 실패한 경우
- 이용자를 안전구역으로 대피·유도, 비상구 확보 및 피난기구 설치 및 방화문(방화셔터) 등 확보로 화재 차단 및 피난로 확보

3) 화재가 확산시
- 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대피활동 지원
- 이용자 및 외부인의 화재현장 접근 통제
- 출입구 및 비상구까지의 피난통로 확보
- 피난기구를 이용한 이용자의 대피활동

4) 화재의 소화시
- 이용자 및 외부인의 화재현장 접근 통제

5) 프로그램실의 대피하지 못한 이용자 색출
- 밀폐된 공간에 남아 있을 이용자를 가능한 빨리 수색한다.
- 대피 집합장소인 101동앞 주차장에서 대피가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가 머물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대장에게 알려 구조가 용이하게 한다.

6. 피난 안내문 및 안내도 작성방법

1) 시설에 있는 이용자의 특성을 분류하여 해당자가 쉽게 방송을 듣거나 방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 대피 방송을 위한 문구를 사전에 비치한다.
3) 시설의 층별 평면도를 그리고, 그 위에 피난방향을 표시한다.
4) 소화기, 옥내소화전, 경보장치, 발신기 등이 있는 위치를 표시한다
5) 막다른 통로나 복도의 위치를 표시하고, 유도등 위치를 표시한다.
6) 피난 안내ㄷ는 실 입구나 계단 근처에 부착하여 둔다.

□ A2-② 책임보험(공제) 가입여부와 내용확인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보험가입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보험가입의무),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Ⅳ.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1.보험가입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화재 및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이용자(생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공제)을 가입하고 있으면 점수 부여(단,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대인과 대물 보험은 반드시 가입하고 있어야 함)

– 아래표에 제시된 내용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책임보험 가입**(2020년 중 보험갱신월부터 적용_갱신 시 단 하루라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점수 미부여)**

- 음식물 생산(급식소, 카페, 제과제빵 등)을 하는 경우
- 엘리베이터, 주차장이 있을 경우(단, 임대 시설의 경우 제외)
- 일반제조물 생산(전기전자, 가전, 의류, 화학품, 생활용품, 사무용품 등)을 하는 경우

○ 평가자료 : 보험증권

복지시설 손해배상책임공제 가입증서

증서번호 : S2018-162812

■ 계약사항

계약자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사업자번호	113-82-71433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15 세화종합사회복지관		
공제기간	2018-08-22 ~ 2019-08-21		

※ 공제(보장)기간은 공제기간 초일 00:00 ~ 공제기간 말일 24:00입니다.

■ 피보험자 (피공제자)

시설명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시설유형	종합사회복지관
소재지	(21936)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15 세화종합사회복지관		
특이사항	복지관1241.24 (1,282,900원)) 푸드뱅크 35.914(36,800원), 방과후교실203.02(207,600원)		

■ 가입담보 / 금액

구분	가입담보	가입금액(천원)		자기부담금(원)	산출기초	공제기간	공제료(원)
		1인당	1사고당				
1	시설소유(관리)자-복지관(노인,사회) (대인)	150,000	200,000	100,000	1480.2㎡	2018-08-22~2019-08-21	970,128
2	시설소유(관리)자-복지관(노인,사회) (대물)	0	300,000	100,000	1480.2㎡	2018-08-22~2019-08-21	233,575
3	구내치료비-치료비 (대인)	1,000	5,000	0	1480.2㎡	2018-08-22~2019-08-21	316,682
4	가스-도시가스 취사용 (대인)	80,000	0	0	1480.2㎡	2018-08-22~2019-08-21	7,000
5	가스-도시가스 취사용 (대물)	0	300,000	0	1480.2㎡	2018-08-22~2019-08-21	0
6	가스-도시가스 난방용 (대인)	80,000	0	0	10000㎡	2018-08-22~2019-08-21	0
7	가스-도시가스 난방용 (대물)	0	300,000	0	10000㎡	2018-08-22~2019-08-21	0

■ 보장사항

가입담보 / 특약에 대한 보장내용(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포함)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의 "복지시설 손해배상책임공제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입 공제료

공제료	1,527,300 원	납입구분	일시납

*본 증서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발행한 원본임을 확인합니다.

발급일 : 2018. 10. 22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강 선 경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공제 가입증서

증서번호 : S2019-197029-000

■ 계약사항

계약자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사업자번호	113-82-71433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15 세화종합사회복지관		
공제기간	2019-08-22 ~ 2020-08-21		

※ 공제(보장)기간은 공제기간 초일 00:00 ~ 공제기간 말일 24:00입니다.

■ 피보험자 (피공제자)

시설명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시설유형	사회복지관
소재지	(21936)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15 세화종합사회복지관		
특이사항	国복지관 이용면적 : 푸드뱅크 17.5 /방과후교실 210.55 /복지관 1199.55		

■ 가입담보 / 금액

	가입담보	가입금액(천원)			산출기초	공제기간
		1인당	1사고당	자부담		
1	시설소유(관리)자-복지관(노인,사회) (대인)	150,000	500,000	100	1427.55㎡	2019.08.22~2020.08.21
2	시설소유(관리)자-복지관(노인,사회) (대물)	0	200,000	100	1427.55㎡	2019.08.22~2020.08.21
3	구내치료비-치료비 (대인)	1,000	5,000	0	1427.55㎡	2019.08.22~2020.08.21
4	엘리베이터-승객용(20명미만) (대인)	100,000	100,000	100	1대	2019.08.22~2020.08.21
5	엘리베이터-승객용(20명미만) (대물)	0	10,000	100	1대	2019.08.22~2020.08.21
6	엘리베이터 구내치료비-치료비 (대인)	1,000	5,000	0	1대	2019.08.22~2020.08.21
7	가스-도시가스 취사용 (대인)	80,000	0	0	1427.55㎡	2019.08.22~2020.08.21
8	가스-도시가스 취사용 (대물)	0	300,000	0	1427.55㎡	2019.08.22~2020.08.21
9	가스-도시가스 난방용 (대인)	80,000	0	0	10000㎡	2019.08.22~2020.08.21
10	가스-도시가스 난방용 (대물)	0	300,000	0	10000㎡	2019.08.22~2020.08.21

	가입담보	가입금액(천원)		자부담	산출기초	공제기간
		1인당	1사고당/연간 총 보상한도			
1	생산물-음식물 (대인)	30,000	100,000	300	1 억	2019-08-22~2020-08-21

* 각 특약들의 가입대상은 복지시설(피공제자)의 관리책임이 있는 시설에 한합니다.

■ 보장사항

가입담보 / 특약에 대한 보장내용(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포함)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의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공제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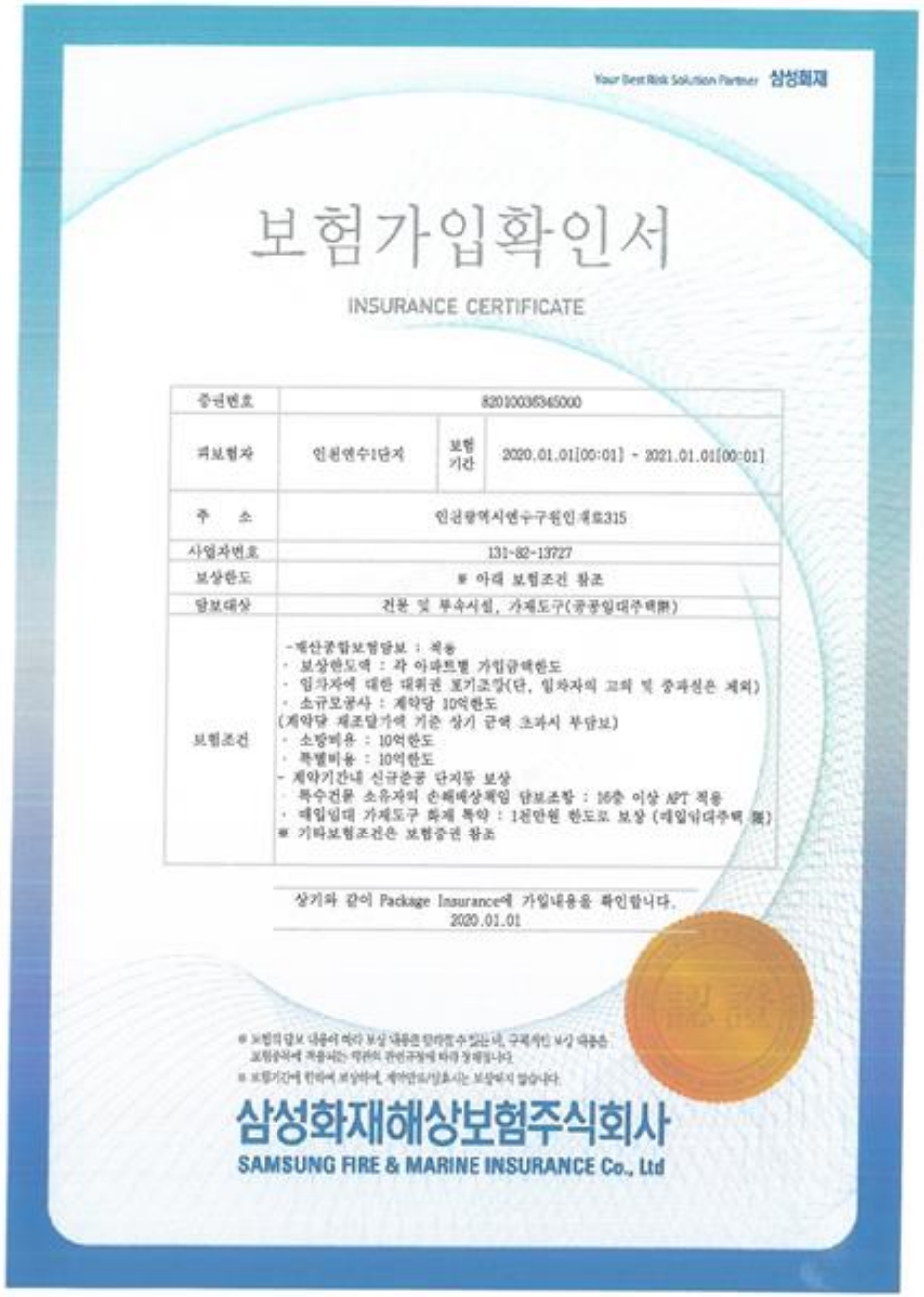
■ 납입 공제료

공제료	1,305,200 원	납입구분	일시납

*본 증서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발행한 원본임을 확인합니다.

발급일 : 2019. 08. 28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강 선 경



Your Best Risk Solution Partner 삼성화재

보험가입확인서

INSURANCE CERTIFICATE

증권번호	82010036345000		
피보험자	인천연수1단지	보험기간	2020.01.01[00:01] - 2021.01.01[00:01]
주 소	인천광역시연수구원인재로315		
사업자번호	131-82-13727		
보상한도	※ 아래 보험조건 참조		
담보대상	건물 및 부속시설, 가재도구(공동임대주택분)		
보험조건	-동산종합보험담보 : 적용 · 보상한도액 : 각 아파트별 가입금액한도 · 임차자에 대한 대위권 포기조항(단, 임차자의 고의 및 중과실은 제외) · 소규모공사 : 계약당 10억한도 (계약당 재조달가액 기준 상기 금액 초과시 부담보) · 소방비용 : 10억한도 · 특별비용 : 10억한도 - 계약기간내 신규준공 단지등 보상 ·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담보조항 : 16층 이상 APT 적용 · 매입임대 가재도구 화재 특약 : 1천만원 한도로 보상 (매입임대주택 限) ※ 기타보험조건은 보험증권 참조		

상기와 같이 Package Insurance에 가입내용을 확인합니다.

2020.01.01

※ 보험의 담보 내용이 여러 보상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보험증권에 적용되는 약관의 관련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하며, 계약갱신/연장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Co., Ltd

일반보험 증권

상품명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14171)

증권번호 2019-4904603 (000)

원본

[1/2 페이지]

● 기본사항

보험기간	2019년 09월 27일 24:00 부터 2020년 09월 27일 24:00 까지 (366일간)		청약일	2019년 09월 23일
계약자	성명/상호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주민/사업자번호	107-82-15606
	주소	[073-33]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8층 (여의도동)		
대표피보험자	성명/상호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주민/사업자번호	113-82-71433
	주소	[219-36]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315 (연수동)		

● 보험료사항

	총보상한도액		총보험료		당회보험료		환율	
화폐		담보별 보상한도액 참조	WON	30,300	WON	30,300	WON	1.0000
원화환산금액		담보별 보상한도액 참조	WON	30,300	WON	30,300	환율적용일	2019-09-23

□ A2-③ 월 1회 이상 안전점검표에 의거 시설 전체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월 1회 이상 안전점검표에 의거한 시설전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항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여부가 있을 경우 점수 부여

>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p.275 「노유자시설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 * 「사회복지시설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p.279 양식 참고
> * 설명회 자료집 [붙임3_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매뉴얼] 참조
> * 노유자시설 여부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

○ 평가자료 : 안점점검표, 시설관리 일지 및 하자보수기록대장 등

시설물 안전관리 일일 점검표

결재	담당	부장	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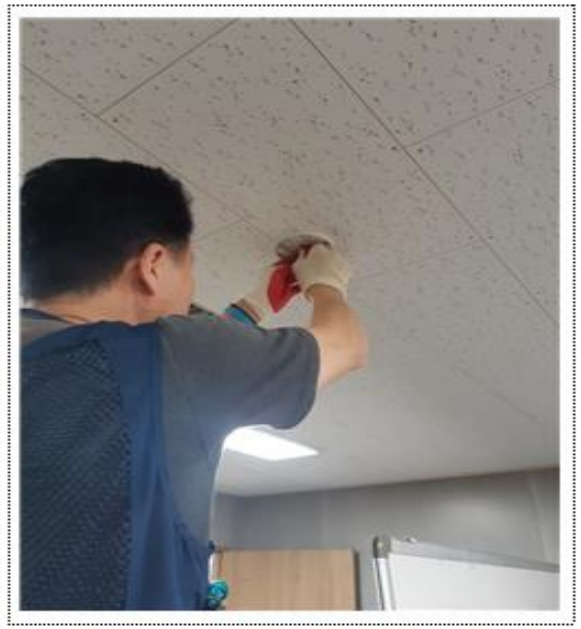
■ 점검일자 : 201[illegible]년 6월 12일 (수요일)
■ 오전점검 : 07시 00분 점검자 [illegible]
■ 오후점검 : 18시 00분 점검자 [illegible]

구분	관리내용	이상유무	조치사항 및 업무내용
건축물설비	○건물 균열이상여부 ○건물주변의 배수상태 이상여부 ○담장,축대, 옥상 및 계단난간 등의 상태 ○옥상 및 각 실 배수시설 및 우천시 누수여부 ○급식소 하수처리 시설 이상여부	무	- 소화기 점검 (수동식 그외에 이상무) - 구조대 사용법부착 - 대피시설내 집무지원 (피로측정)
전기 설비	○전선, 배선기구, 변전설비 이상여부 ○전등설비 이상여부 ○전열설비 이상여부 ○심야전기설비 이상여부(난방,급탕시설)	무	
상수도설비	○상수도 급수설비 이상여부 ○지하수 급수설비 이상여부 ○오폐수 처리시설(정화조)이상여부 ○급수 및 배수모터 이상여부	무	- 작동기능점검 (정원이엔지 - 리세스)
소방설비	○소화설비 이상여부(소화기,소화전,스프링클러) ○경보설비 이상여부 (화재탐지,누전경보, 청각·시각 경보설비) ○소화활동 설비이상여부 (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 연소방지설비) ○방화셔터, 완강기 등	유	⇒지적사항 1. 감지기 고장나 : 개보승급신 자망반 자원봉사실 2. 열선복장 - 강당
가스설비	○가스경보 설비 이상여부 ○저장장소 환기통풍 설비 이상여부 ○가스설비 주변 위험물 제거 여부	무	
안전 및 보안	○1층 조리실, 주민사무실, 푸드뱅크 보안여부 ○2층 사무실, 강당, 프로그램실 보안여부 ○3층 방과후교실, 사례관리센터 보안여부 ○각 프로그램실 시건장치 이상유무	무	3. 방화셔터 감지기 연동부착 ⇒방화구획 집무 요청.
위생 및 청결	○1층 조리실, 주민사무실, 푸드뱅크 위생청결 ○2층 사무실, 강당, 프로그램실 위생 및 청결 ○3층 방과후교실, 사례관리센터 위생 및 청결 ○화장실 및 복도 위생 및 청결, 쓰레기통비움	무	
기 타	○기관운영차량(경차, 승합차 등) 이상여부 ○실별 비품 및 기자재 관리 ○강당 방송통신 장비 이상여부 ○각 층 창고 정리 정돈 여부 ○3층 베란다 및 외부 베란다 관리상태	무	

세화종합사회복지관

피난기구	적응성 있는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는가	○
	피난기구의 고정장치는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
	피난기구의 사용에 장애가 되는 장애물은 없는가	○
	피난기구 사용방법 등은 설치되어 있는가	○
	피난기구는 실제 활용이 가능한가	○
소화용수 설비	소화수조의 흡수관 투입구 및 수원 확보 여부	○
	상수도소화전 주위의 장애물 제거 여부	○
방화 셔터	화재시 연동하여 자동으로 폐쇄되어 작동하는가	○
	방화셔터 주위에 적재물은 제거되어 있는가	○
출입문 / 비상구	출입문 및 비상구 주위에 적재물은 제거되어 있는가	○
	출입문등이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인가	○
	층별, 면적별, 용도별 방화구획은 되어 있는가	○
	방화문은 화재시 폐쇄가 용이한가	○
전기 시설	정격 및 허용 전류에 맞는 개폐기 사용 유무	○
	규격전선을 사용하고 누전 및 단락된 곳은 없는가	○
	안전관리자에 의한 안전관리점검 유무	○
	누전차단기의 정상 작동 유무	○
	문어발식 콘센트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
	전열기구가 과열 등으로 위험하지 않은가	○
	전열기구 등의 주위에 가연물은 없는가	○
	누전경보기 회로 점검시 이상 유무	○
가스시설	가스누설경보기 또는 자동식소화기의 설치 유무	○
	화재시 가스누설경보기가 자동으로 경보를 발령하는가	○
	화재시 가스누설차단밸브는 자동으로 폐쇄되는가	○
	가스시설 주위에 가연물이나 화기 등은 없는가	○
	안전관리자에 의한 안전관리 점검 유무	○
	배관 및 화기시설의 가스누설은 없는가	○
재해방지	건축물 주위의 배수로 확보 유무	○
	건축물의 균열 또는 변형 등의 발생 유무	○
	응급환자 발생시 유관기관 연락체계 수립 유무	○
	응급구조 물품 및 약품의 비치 유무	○
기타시설	복도 및 계단에 피난상 장애가 되는 적재물은 제거되어 있는가	○
	소방차 진입로 및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19.8.27. 소방 지적사항 시정조치



2020.4.25. 남자화장실 누수 시정조치



2020.11.27. 2층 도서관 누수 시정조치



2021.7.17. 엘리베이터 지붕누수 수리

□ A2-④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또는 부착 확인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9조(별표 1의2, 별표 2) [19.1.15 개정, 20.1.16 시행]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인정범위

- 침실, 거실, 옥상, 난간, 보일러실, 전기실, 기계실, 보일러실, 물탱크실, 비상 발전기실, 주방 등의 장소에 미끄럼주의, 화상주의, 화재주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난간에 추락주의 등 주의 또는 경고가 필요한 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였을 경우 점수 부여(실제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
- 안전·보건표지는 시설환경에 맞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또는 이외의 종류와 형태로 설치하거나 부착하였을 경우 점수 부여
-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장소는 시설환경에 맞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참고하여 설치 및 부착
- **필수사항** : 주방(미끄럼주의, 화상주의, 화재주의), 옥상·난간(추락주의), 전기실(관계자 외 출입금지, 고압주의), 기계실·보일러실·물탱크실(관계자 외 출입금지), 비상발전기실 및 휘발유 저장탱크(인화성물질 경고)
- 위의 장소가 별도로 없거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일 경우 해당항목 점수 부여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별표 1의2]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시행규칙 제6조의1 관련)

1. 금지표지	101 출입금지	102 보행금지	103 차량통행금지	104 사용금지	105 탑승금지	106 금연
107 화기금지	108 물체 이동금지	2. 경고표지	201 인화성물질 경고	202 산화성물질 경고	203 폭발성물질 경고	204 급성독성물질 경고
205 부식성물질 경고	206 방사성물질 경고	207 고압전기 경고	208 매달린 물체 경고	209 낙하물 경고	210 고온 경고	211 저온 경고
212 몸균형 상실 경고	213 레이저광선 경고	214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 과민성 물질	215 위험장소 경고	3.	301 보안경 착용	302 방독마스크 착용

A2-④ 안전을 위하여 안전 · 보건 표시를 설치 및 부착하고 있다.



조리실 - 미끄럼, 화상, 화재주의



조리실 - 미끄럼, 화상, 화재주의



전기실 - 출입금지, 고압주의



옥상난간 - 추락주의



계단주의



미끄럼주의

□ A2-⑤ 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의 교육 이수여부와 내용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전문업체에 위탁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설내부의 안전관리담당자가 임명되어 있으며, 평가기간 동안 안전관리담당자가 시설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우 점수 부여
- 시설 내 별도 시설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영구임대아파트 등)에도 시설 직원 중 안전관리 담당자를 별도로 선임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점수 부여
- 자격증 보수교육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종류와 관계없이 연1회 이상 받은 경우 점수 부여
- **코로나19 확산 대응으로 2020년도부터는 온·오프라인 교육 모두 인정**

○ 평가자료 : 수료증, 교육확인서(증), 출장명령서, 교육자료 등

□ A2-⑥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 여부 확인(가산점 0.3점 적용)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인정범위 :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평가자료 : 건축물 대장 내 내진설계 여부 또는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서

A2-⑤ 시설 안전담당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고 있다.

교육일시	교육명	교육주최	교육 참석자
2019.05.08	사회복지시설 안전 강화 교육	한국시설안전공단	윤상록 시설기사
2020.09.01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시설물안전, 위생, 재난관리)	GSEEK	윤상록 시설기사
2020.09.02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화재예방, 전기, 가스관리)	GSEEK	윤상록 시설기사
2020.11.22	사회복지시설관리자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한국시설안전공단	윤상록 시설기사
2021. 6. 21	사회복지시설 안전교육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윤상록 시설기사
2021. 9. 29	승강기 안전관리교육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윤상록 시설기사

평가항목	A3. (전체공통) 응급상황 및 화재예방 안전체계 구축	
평가목표	응급상황 및 화재발생 시에 대비한 교육 및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해당여부
평가내용	① 이용자를 위한 응급대처 매뉴얼이 있다.	
	② 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대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③ 연 2회 이상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④ 시설구조에 맞게 피난대피도를 부착하고 있다.	
	⑤ 양방향 피난통로가 확보되어 있다.	
	⑥ 소화기 설치 및 관리상태가 적절하다.	
	⑦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배점방식	· 우 수(4점) : 7개 항목이 해당된다. · 양 호(3점) : 6개 항목이 해당된다. · 보 통(2점) : 5개 항목이 해당된다. · 미 흡(1점) : 4개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	점 수

□ A3-① 응급대처 매뉴얼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안전사고, 비상사태,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 구비 확인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매뉴얼(SOP)_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3번 자료 참고

- 비상연락망, 응급 조치 절차 및 방법, 응급구조 방법 등 확인

○ 평가자료 : 응급대처 매뉴얼 등

응급상황 대처 매뉴얼

○ 이 매뉴얼은 세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 화재사고, 전기, 가스, 시설물, 자연재난 등으로 인해 재난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종사자나 이용자들이 지켜야 하는 임무나 역할,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Ⅰ 이용자 응급상황발생 대응활동

1. 응급 상황 시 행동단계

상황인지 (Check)	119신고 (Call)	처치 및 도움 (Care)
-현지 상황파악 -환자 증상파악 -상황 원인 파악 -위험요인 인지	-전화 거는 사람의 이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환자의 상태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장소는?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실시해야할 행동요령 -응급처치(심폐소생술, RICE대처법 등)

2. 상황별 응급대처 방법

1) 성인(9세 이상) 심폐소생술

호흡과 의식이 없을 때 실시한다. 소생술은 심장과 호흡이 멈춘 지 4분 이내에 시작하면 살아날 가능성이 높으며, 시간이 갈수록 뇌가 손상되어 사망하게 된다. 시간에 따른 환자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1) 0~4분 : 소생술을 실시하면 뇌손상 가능성이 거의 없다. 2)4~6분 : 뇌손상 가능성이 높다. 3) 6~10분 : 뇌손상이 확실하다. 4) 10분 이상 : 심한 뇌 손상 또는 뇌사상태가 된다.

그러나 회복 불가능한 질환을 가진 사람이나 오랫동안 심장이 멈추어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는다. 단, 예를들어 물에 빠져서 낮은 온도에 노출된 사람이나 어린 아이는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더라도 뇌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시행해야 한다.

■ 병○기관 협조하에 감염자○유 증상자 치료기관 이송 및 ○리조치 한다.
■ 환자 접촉을 통한 2차 감염 우려자 파악(정밀진단 실시) 후 별도 격리조치 한다.
■ 음용수 및 급식제공 시설 등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Ⅶ 대설재난 안전관리 매뉴얼

1. 위기징후(대설) 파악
■ 기상청 기상정보를 통해 기상정보 및 특보를 수집한다.
■ 대설관련 위기정보를 수집하여 적절한 재난대비 조치를 시행한다.

2. 위기징후 판단
■ 대설 예상 강설·적설량, 피해예정 범위와 규모를 파악한다.
■ 필요 장비·인력 등의 확보를 위한 가능성을 파악한다.

3. 관심(Blue)단계 조치사항
■ 기상청 등의 자료(기습 폭설 등)를 바탕으로 기상상황 관측 및 예보를 모니터링 한다.
■ 대설 발생시 기간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로 기간 내에는 기상예보를 주시한다.

4. 주의(Yellow)단계 조치사항
■ 기상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설 및 기습 폭설 등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5. 경계(Orange)단계 조치사항
■ 기상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설 및 기습 폭설 등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재난위기상황판단 및 위기경보발령을 접수하여 시설 내에 전파하고,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확인한다.

6. 심각(Red)단계 조치사항
■ 중앙재난종합상황실에서의 상황 판단 참고 및 대설재난 가능성, 심각성, 대설발생 지역범위 및 예상적설량등을 참고하여 비상근무 실시여부 및 규모 등 대처계획을 논의한다.

□ **A3-② 연1회 이상 예방교육(대처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응급상황에 대한 예방교육(대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을 경우 점수 부여

- **코로나19 확산 대응으로 2020년도부터는 온·오프라인 교육 모두 인정**

○ 평가자료 : 교육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A3-② 직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대처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연도	일시	대상	내용	관련문서
2019	6.03(월) 10:00	이용자 및 종사자 20명	화재예방 및 응급대처교육	시설관리 관련철 교육훈련기록지 (2019-06-03)
2020	12.01(화) 16:00	이용자 및 종사자 18명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	시설관리 관련철 세화 20-1124
2021	3.23(화) 10:00	이용자 및 종사자 20명	응급처치 및 응급상황 행동요령 등	시설관리 관련철 세화 21-336





□ **A3-③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 시행 내용 확인**

○ 대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 인정범위

- 연2회 이상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훈련도 점수 부여)을 실시한 계획서 및 사진(필수), 결과보고 등 확인
- **코로나19 확산 대응으로 2020년도부터는 연 1회 이상 실시 시 인정**
-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훈련방법(시설 피난계획서)을 계획하고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을 경우
- 항목 ②의 예방교육(대처교육)과 자체 모의훈련을 함께 진행해도 점수 부여. 단, 예방교육(대처교육)과 자체모의훈련을 구분하여 진행된 근거가 확인될 경우 점수 부여

○ 평가자료 : 자체 모의훈련 계획서, 결과보고, 관련 사진(필수) 등



2019년 상반기 모의훈련



2019년 하반기 모의훈련



2020년 상반기 모의훈련



2020년 하반기 모의훈련

□ A3-④ 시설의 피난대피도 부착 여부 확인

○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인정범위

- 피난대피도는 이용자의 특성에 맞게 각 실(출입문이 있는 모든 실을 의미함)의 출입구 우측 또는 좌측에 설치되어야 함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A3-④ 시설구조에 맞게 피난대피도를 부착하고 있다.



1층 비상대피도



2층 비상대피도





□ A3-⑤ 양방향 피난통로 확보 여부 확인

○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별표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제1조제1항 관련)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인정범위

- 양방향 피난통로라 함은 어느 곳에서나 두 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피난통로가 확보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확보된 피난통로와 소방시설 주변에 이동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장애물이 없는 경우 점수부여
 * 계단, 경사로 등은 옥상 또는 지상층 양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어야 함
 * 계단 또는 경사로가 어느 한 방향으로만 피난할 수 있는 경우 2층 이상(국민안전처 고시 제2017-24호)의 건물에는 완강기, 구조대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 지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실, 식당 등은 반드시 양방향 피난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계단이 1개만 있을 경우 피난사다리를 갖추고 창문 등을 통해 외부로 피난할 수 있어야 함(창문에 쇠창살이 없거나 화재 시 쇠창살 등 피난을 막는 장치가 자동개폐 기능이 있어야 함)
- 옥상이 없는 주택 등에 위치한 경우는 해당항목 점수부여

○ 평가자료 : 현장 확인

A4-⑤ 양방향 피난통로가 확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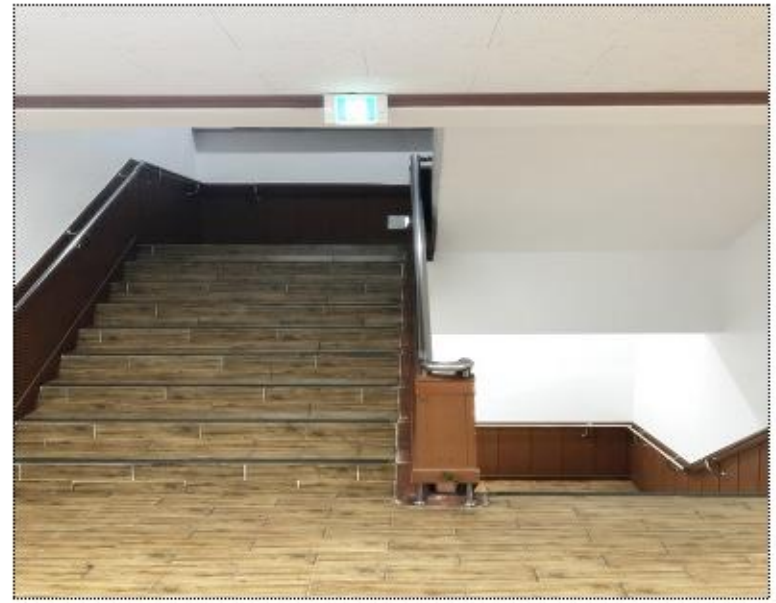


정문 피난통로



후문 비상통로





□ A3-⑥ 소화기 설치 및 관리상태 적절성 확인

○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4조 4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인정범위

- 관련 법령에 따른 소화기 설치 확인
- 아래 참고기준 이외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한 경우 법적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점수 부여

○ 평가자료 : 현장 확인**(게이지 녹색 위치 확인 및 내용물 굳어있는지 확인)**

[참고] 관련 법령에 따른 소화기 설치내용

법령	주요내용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5]	(소화설비)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101) 제4조	(설치기준) 가.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 물줄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101) [별표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용도별) 나. 음식점·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어부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나목의 **주방의 경우, 1호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하여야 한다. * **K급 소화기**(Class K Fire Extinguishers)란 식물성, 동물성 기름과 지방 등 가연성 튀김기름을 포함한 조리로 인한 주방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화재 진압이 가능한 소화기

A4-⑥ 소화기 설치 및 관리상태가 적절하다.

■ 소화기 비치현황

층수	프로그램실	소화기	투척용	관리상태	비고
1층	주민사무실	1		양호	
	푸드뱅크	1		양호	
	조리실	2	1set(4)	양호	K급1개, 자동확산1개
2층	피아노실	1		양호	
	기부식품사무실	1		양호	
	체육프로그램실	1		양호	
	학습프로그램실	1		양호	
	자원봉사실	1		양호	
	자원봉사실 복도	2	1set(4)	양호	
	문서고	1		양호	
	사무실	3		양호	
	도서관	1		양호	
	강당	3		양호	
	방송실	1		양호	
	건강관리실	1		양호	
	2층 복도	2	1set(4)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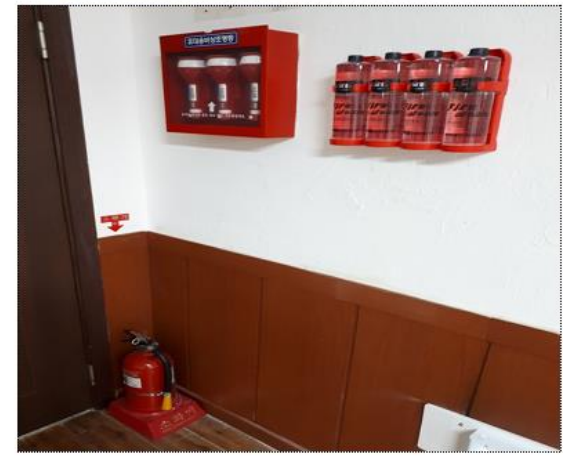


1층 주방 화재용 소화기 설치



3층 주방 화재용 소화기 설치





□ A3-⑦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여부 확인

○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5조

○ 대상기간 : 평가일 현재

○ 인정범위

- 법적 기준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단, 법적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은 근거자료 제시할 경우 점수 부여

○평가자료 : 현장 확인

구분	대상시설 및 범위	비고
1-라. 스프링클러 설비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은 모든 층 다)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은 면적 관계없이 모두 포함
1-마.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1)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게가 1000㎡ 이상인 것의 모든 층 4) 노유자시설 가) 제12조 제1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시설(제12조제1항제6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이라 한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2-라. 자동화재 탐지설비	6) 노유자 생활시설 7)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대상시설 및 범위 이외의 시설 중 연면적 400㎡ 이상 시설
2-마. 자동화재 속보설비	2) 노유자 생활시설 3)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500㎡이상인 층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가능

A4-⑦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스프링쿨러



자동화재 탐지 - 연기감지기



자동화재 탐지 - 열감지기



자동화재 수신기

중대재해 대응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하기

2025년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시설안전·보건 관리 종합계획서

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
세화종합사회복지관

교육 과제 및 워크샵 주요 내용

1. 교육전 과제(개인 사전 준비) : 가능하면 교육용 단톡방에 공유

 → 우리 기관 시설안전보건 종합계획서 작성해보기(또는 작성된 계획서 가지고 오기)

2. 교육중 과제(조별 워크샵) : 도화지, 색연필 등

 ① 각 기관별 계획서 공유하고 차이점/보완점/좋은 사례 찾아보기

 ② 공유하고 토론한 내용을 발표하기

노인복지시설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보건복지부

[소관부서] 노인정책관

장애인 복지시설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보건복지부

[소관부서] 장애인정책국

아동·영유아 복지시설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보건복지부

[소관부서] 인구아동정책관, 보육정책관

기타(노숙인 · 정신질환 등) 복지시설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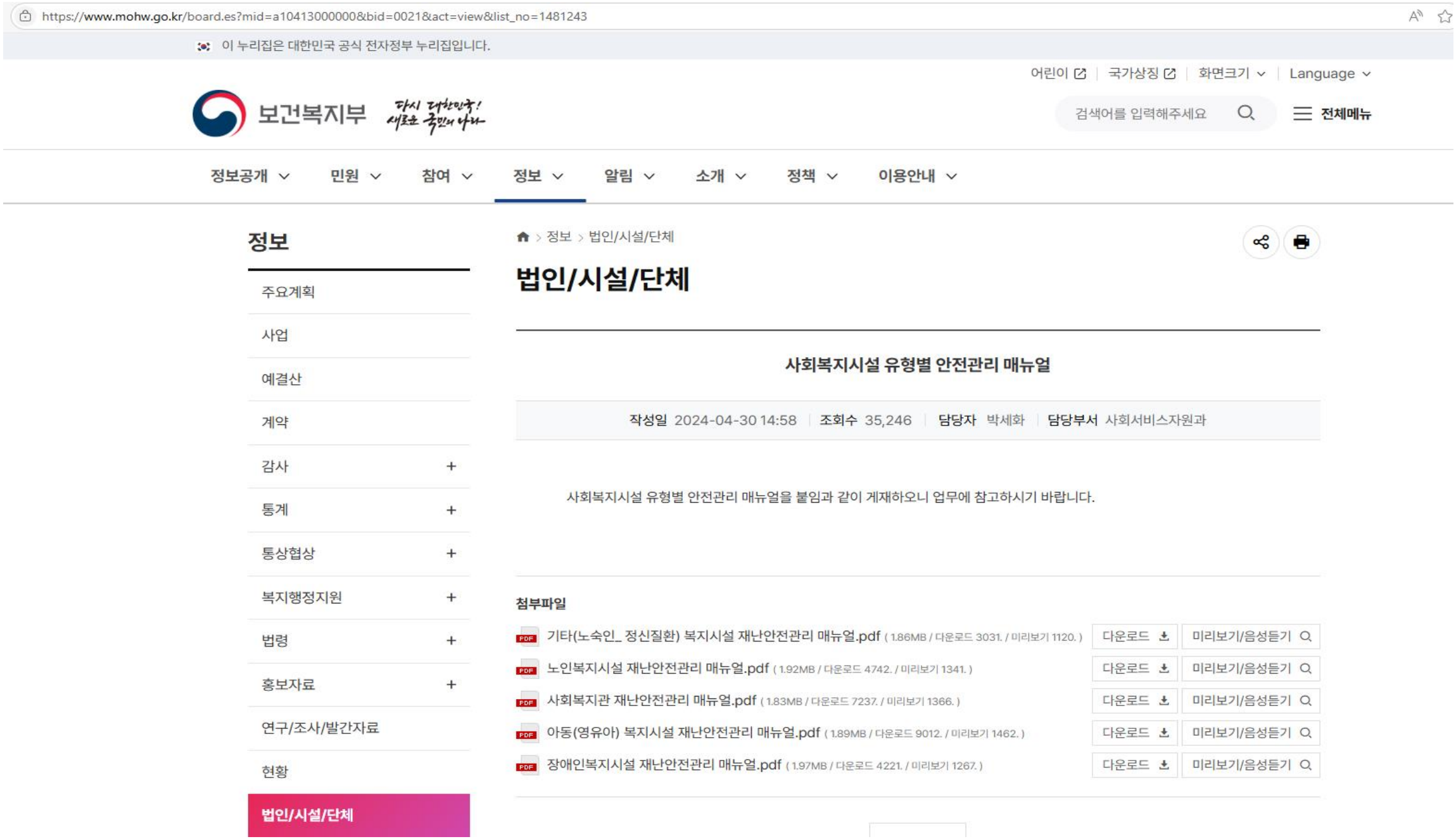
[소관부서] 0000000

사회복지관 시설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보건복지부

[소관부서] 00000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안전관리 매뉴얼 < 법인/시설/단체 >



사회복지시설 재난안전매뉴얼 - 검색 동영상

https://www.bing.com/videos/search?q=사회복지시설+재난안전매뉴얼&qpvt=사회복지시설+재난안전매뉴얼&FORM=VDRE

Microsoft Bing 사회복지시설 재난안전매뉴얼 English 용길 185

검색 COPILOT 동영상 이미지 지도 뉴스 더 보기 유해 정보 차단: 엄격 필터



YouTube · 국토안전관리원

2022년 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③(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국토안전관리원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시설물안전법 #안전사고 22년도 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조회 수: 2.3만 · 2022년 7월 27일

짧은 동영상



아동복지시설 기관방문 #사회복지사 2급 #생활지원사

· 메타복지



아동복지시설 기관방문 #사회복지사 1급 #생활지원사

· 메타복지

사회복지사 시험



2026년 사회복지사1급 시험 합격전략설명회 - 기본정보부터 ...

YouTube · 해커스사회복지사
조회 수: 1344 · 1개월 전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개정법령특강 2시간 총정리...

YouTube · 해커스사회복지사
조회 수: 1.4만 · 5개월 전



[시험 전 필수 시청] 제 2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파이...

YouTube · 해커스사회복지사
조회 수: 9862 · 4개월 전

인기 동영상



2024년 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I 교육 ...

YouTube · 국토안전관리원
조회 수: 1.5만 · 9개월 전



2023년 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

YouTube · 국토안전...
조회 수: 2.4만 · 2023년 7월 25일



[2024년 자율안전점검 요령 교육] ② 사회복지시설 관련 안전...

YouTube · 국토안전관리원
조회 수: 1.7만 · 2024년 2월 7일



2024년 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I 교육 안내 및 ...

조회 수: 1.5만 · 9개월 전
YouTube › 국토안전관리원



2023년 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② - 사회복지시...

조회 수: 2.4만 · 2023년 7월 25일
YouTube › 국토안전관리원



[2024년 자율안전점검 요령 교육] ② 사회복지시설 관련 안전제도 교육 - 사...

조회 수: 1.7만 · 2024년 2월 7일
YouTube › 국토안전관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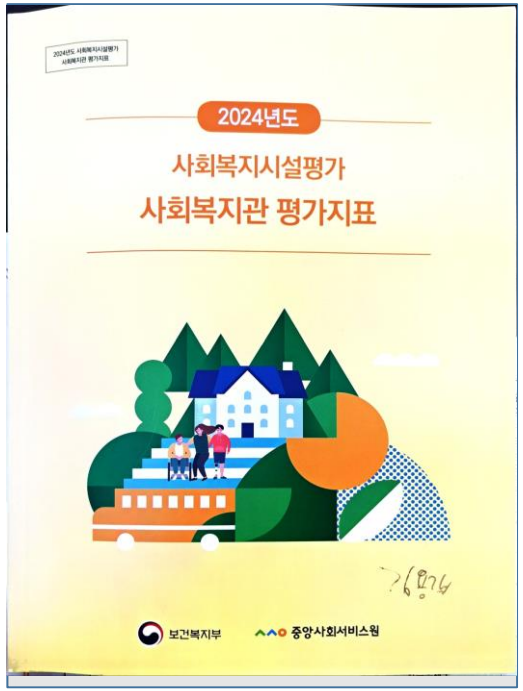
2024년 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I 사고사례 및 안...

조회 수: 1.9만 · 9개월 전
YouTube › 국토안전관리원



2023년 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③ - 시설물 안전...

조회 수: 1.5만 · 2023년 7월 25일
YouTube › 국토안전관리원







2025년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시설안전·보건 관리 종합계획서

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
세화종합사회복지관





